

노동패널자료 연구(II)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홍민기 · 안태현 · 김우영 · 성재민



목 차

요 약	i
제1장 노동패널 자산조사	(홍민기) 1
제1절 조사 항목의 비교	1
제2절 자산의 비교	3
제3절 맺음말	12
제2장 노동패널 근로시간 조사	(안태현) 13
제1절 머리말	13
제2절 표본 및 조사 설계 비교	13
제3절 노동시간 비교	15
1. 임금근로자	15
2. 비임금근로자	20
제4절 맺음말	23
제3장 지역별 인구구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고령화의 영향	(김우영) 24
제1절 서 론	24
제2절 지역별 인구 및 취업자 고령화	26
1. 인구 고령화 정도와 그 변화	26
2. 인구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	31
3. 고령화의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33
제3절 지역별 취업자 고령화	36

1. 고령 취업자 비중과 그 변화	36
2. 고령 취업자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	38
3. 고령 취업자의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39
제4절 산업의 고령화 추이	41
1. 산업별 고령자 비중	41

제4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에 대한 검토

..... (성재민)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 비교	54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 조사 연혁	54
2. 가계동향조사와 COICOP 설명 및 노동패널과의 비교	58
제3절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액 비교	64
제4절 해외 주요 가구패널의 소비지출 질문 구성	71
제5절 결론 : 노동패널에 대한 합의	78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1- 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의 자산조사 비교	2
<표 1- 2> 부채 조사 비교	3
<표 1- 3> 개인 자산의 비교(2013년)	4
<표 1- 4> 가구 자산 평균액의 비교(2013년)	7
<표 1- 5>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
<표 1- 6> 상속세 자료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금액과 비중 (2013년)	9
<표 2- 1> 표본 설계 비교	15
<표 2- 2> 임금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16
<표 2- 3> 정규직 근로시간	17
<표 2- 4> 비정규직 근로시간	18
<표 2- 5> 한시근로자의 근로시간	18
<표 2- 6>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19
<표 2- 7> 한시근로자의 근로시간	19
<표 2- 8>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21
<표 2- 9> 자영업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22
<표 2-10>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22
<표 3- 1> 인구(15~99) 중 65세 이상(65~99) 비중	27
<표 3- 2> 인구(15~99) 중 65세 이상(65~99) 지역별 순위	30
<표 3- 3> 인구총조사 고령화 지역 순위와 노동패널 고령화 지역 순위의 상관계수	31
<표 3- 4>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전체)	33
<표 3- 5>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35

<표 3- 6>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37
<표 3- 7>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전체)	39
<표 3- 8> 고령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지수, 격리지수	40
<표 3- 9> 산업별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42
<표 4- 1> COICOP 기준에 맞춘 개편 전·후 항목 비교 (2008년 기준)	60
<표 4- 2>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소비항목 분류 비교 ...	61
<표 4- 3>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의 월평균 소비 추이	65
<표 4- 4> 노동패널의 생활비 총액과 세분류합 크기별 분포와 평균 차이	66
<표 4- 5> 생활비 총액과 세분류합 크기별 평균 생활비	67
<표 4- 6> 교육비 비교	68
<표 4- 7> 주거비, 통신비, 보건의료비 비교	69
<표 4- 8> 생활비 수준별 분포(2014년 기준)	69
<표 4- 9> PSID의 소비지출 항목과 조사대상 기간 및 응답자 조사대상 기간 응답 비중 분포(1999~2003년 평균치)	72
<표 4-10> 영국 UNDERSTANDING SOCIETY의 가구 일상 지출	74

그림목차

[그림 1-1]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2012년 귀속)	5
[그림 1-2] 자산 구간별 가구의 분포	6
[그림 1-3] 총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의 비중	8
[그림 1-4] 상속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10
[그림 1-5] 부채/총자산 비율	10
[그림 1-6]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관계(가계금융복지조사)	11
[그림 3-1]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 (전국, 2009~2015년)	29
[그림 4-1] 소비액 밀도함수	70
[그림 4-2] GSOEP의 가구 설문지 지출 질문 구성	75
[그림 4-3] GSOEP의 가구 설문지 지출 질문 구성(Groceries)	75
[그림 4-4] HILDA 가구 설문지 지출 질문 구성	76
[그림 4-5] HILDA 자기기입식 설문지 지출 질문 구성	77

요약

1. 노동패널 자산조사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과 다른 자료의 자산조사를 비교한다.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을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이 있고, 실물자산에는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있다. 세분류까지는 두 조사의 차이가 없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부채를 5가지 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하는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부채를 3가지 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개인자산 총액은 2013년 7,585조 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5,906조 원, 노동패널에서는 4,186조 원으로 파악된다. 국민계정 대비 비율은 각각 77.9%, 55.2%이다. 노동패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자산이 적은 가구를 많이 포착하고, 자산이 많은 가구를 적게 포착한다.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자산 구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노동패널에서는 20.0%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6.7%이다. 금융자산의 보유는 집중도가 매우 높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까닭이다.

2. 노동패널 근로시간 조사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그리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하고 차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은 공통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업체 조사인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에서는 노동패널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약 3시간 정도 짧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이다.

한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거의 일치하며 근로형태별 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이 평균 42시간 정도이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5~10시간, 근로형태별 조사보다는 7~8시간가량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이는 시간제 근로를 정의하는 설문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근로)의 경우,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이 거의 일치한다. 근로형태별 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형태별 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이어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비임금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 내외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근로시간은 46시간 정도로 4시간의 격차를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해당 조사 주 근로시간보다 길다. 또한, 노동패널의 근로시간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보다 약간 길기는 하지만 평균 1시간 이내로, 두 조사 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통계의 비교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근로시간이 횡단면 가구와 가구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과 거의 일치하여 비임금 근로시간 통계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한 근로시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우 유사하여 노동패널 조사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별 인구구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이 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RES)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인구의 증가가 지역고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고령자 비중은 12.9%이고, 2015년에는 15.3%로 약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패널에서는 동 기간 동안 고령자 비중이 12.8%에서 15.0%로 증가하여 2.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의 경우 2010년까지 노동패널이 인구총조사보다 고령자 비중을 과대 추정하고 그 이후에는 약간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다. 여성의 경우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령자 비중을 과소 추정하고 있으며, 2012~2013년의 경우 그 격차도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인구총조사 2009년과 노동패널 2009년의 지역 순위 사이의 상관관계는 0.8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99%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져 0.80을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도의 고령화 순위에서 있어서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지역 순위와 2015년 지역 순위는 인구총조사의 경우 0.90으로 매우 높은 반면 노동패널의 경우에는 0.6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총조사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역의 고령화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노동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령화 진전이 지역 간 다르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

노동패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지수값이 인구총조사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지만 격리지수의 추세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패널의 상이지수도 인구총조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격리지수는 2009년 9.29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가 2015년에 다시 9.27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에 기초한 격리지수를 이용할 경우 고령자의 특정 지역 집중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상이계수는 2009년 12.28에서 2015년 9.43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패널에서도 10.42에서 8.11로 떨어지고 있다. 격리지수 역시 동 기간 동안 11.89과 9.74에서 각각 7.81과 5.12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의 크기에 있어서는 두 조사 간 차이가 있지만 하락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지역별 고용조사와 비교하여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패널에서의 고령자 비중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 있는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 고령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비율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에 대한 검토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 조사의 품질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비교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주요 패널연구의 소비항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분석결과로 볼 때, 교육비 같은 것은 주요 제도 변화나 인구 변화와 같이 가는 중이며, 구성 항목이 많지 않아 쉽게 응답 가능한 통신비 같은 항목은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간 소비액 변화를 보면 경기반응도 가계동향조사와 비슷한 모습인 것으로 추론되어 가계부 기장 방식의 꼼꼼한 조사는 아니지만 소비와 노동공급의 관계 등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꽤 그럴듯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일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소비 중에 비중도 큰 식품, 외식 관련 지출은 2014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거의 같았다. 생활비 전체적인 액수 차이도 노동패널이 다소 포괄성이 떨어지는 소비항목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분포 차이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패널은 주거비에서 가계동향조사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주로 젊은 층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조사 시 좀 더 꼼꼼한 응답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목을 너무 세분하면 응답의 짐이 커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소비 그 자체가 조사의 목적인 가계동향조사처럼 모든 소비지출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은 노동패널의 소비항목조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영국의 BHPS 등 해외 가구패널조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패널의 소비항목조사는 이미 충분히 세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나친 세분화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노동패널은 소비 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소비를 질문해 은퇴-소비 같은 라이프 사이클 상 변화를 포착하거나, 경기-소비, 실업-소비 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등이 목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동패널이 노동공급 측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비스 지출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연구한다면 가사관리(가사사용인 등)나 양육, 보육, 기타 (고령자)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의 소비 문항 어디에서 이들 문항이 포착되어야 하는지 가이드를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추가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 지출에서 고령자 요양 비용 같은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눈에 띄는 곳에 가이드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의 보건비는 병의원비나 약제비처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항목 외에도 인삼 등 한방 보약제와 비타민 등 영양보조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비를 포함한다. 노동패널도 이런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가이드 추가가 추천된다.

또한, 주류 및 담배나 배달음식, 커피 등 음료 구매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차체에 문항 가이드를 통

해 이 부분 지출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를 포착하는 항목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인테리어 소품 구매 비용(커튼이나 카펫, 가구, 기타 장식품 등), 집수리, 유지 관리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인테리어 소품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편제되는데, 노동패널은 이에 대응하는 항목이 애매하므로 주거비에 편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 시 어떤 항목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내구재, 비내구재, 교육비, 문화비 순의 영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는 지금 항목 구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라 외식이 강화될까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주식이 외식화되는 것은 현재의 외식 정의상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외식의 정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얼마 지출되고 있는지 가구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알 수 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비소비지출 항목인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누락 안 되고 잘 응답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 자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노동패널에서 잘 잡히면 소득재분배 연구에서 노동패널의 활용 범위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 1 장

노동패널 자산조사

제1절 조사 항목의 비교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산분포 혹은 자산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부족해서 많지 않다. 이정우·이성림(2002)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가구자산 분포를 연구하였고, 성명재·김현숙(2006)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2003년 부동산 과세자료와 소득정보가 담긴 200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보았다. 전병유·정준호(2014)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산과 소득과의 관련성을 외국과 비교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보다 표본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가 많이 포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과 다른 자료의 자산조사를 비교한다. <표 1-1>에서는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조사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을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이 있고, 실물자산에는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있다. 세분류까지는 두 조사의 차이가 없다.

<표 1-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의 자산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자산	저축액	적립식	예·적금 저축성 보험
		예치식	주식, 채권, 신탁
		기타 저축(권리금 포함)	아직 타지 않은 게 빌려준 돈 기타
	전·월세 보증금		(전월세)임대보증금 거주 외 임대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시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거주 외 소유부동산 (주택, 건물, 임야, 토지, 기타)
		계약금·중도금	×
	기타 실물자산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외 기타 실물자산	자동차 외 기타 자산

총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금융자산 = 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 부동산 + 기타 실물자산

세분류 이하 항목에서도 두 조사는 큰 차이가 없다. 노동패널에서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으로 묻는 것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적립식 저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차이인데 실질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나는 항목은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있지만 노동패널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달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자산분포가 다를 가능성은 없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뉜다.

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표 1-2>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의 부채 조사항목을 비

〈표 1-2〉 부채 조사 비교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
중분류	세분류	세부항목	
금융부채	담보대출	거주주택 담보,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 금융 담보, 기타 담보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에게 빌린 돈
	신용대출	마이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	
	기타 부채	갯돈을 탄 후 낼 금액	계 타고 낼 금액 기타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 건물, 토지 임대	

교하고 있다. 부채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가 세분화되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금융부채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 부채 등 5가지 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하는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금융부채를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 부채 등 3가지 세분류로 조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대출의 성격에 따라 금융부채를 나눈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금융부채를 나누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가지 세분류로,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항목으로 조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임대보증금이 거주주택 임대보증금인지 거주주택 이외 임대보증금인지 알 수 있지만 노동패널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제2절 자산의 비교

노동패널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자산이 많은 가구들을 다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국민계정과 조사자료에서 자산

〈표 1-3〉 개인자산의 비교(2013년)

(단위: 십억 원)

	국민계정 (1)	가계금융 복지조사 (2)	비율 (2)/(1)	노동패널 (3)	비율 (3)/(1)
총자산	7,585,524	5,906,222	0.779	4,186,101	0.552
금융자산	2,673,989	1,578,372	0.590	837,631	0.313
실물자산	4,911,535	4,327,850	0.881	3,348,470	0.682
순자산	6,365,889	4,850,691	0.762	3,412,990	0.536
부채 총액	1,219,635	1,055,531	0.865	773,111	0.634

주: 국민계정은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말함.

총액을 비교한 것이 <표 1-3>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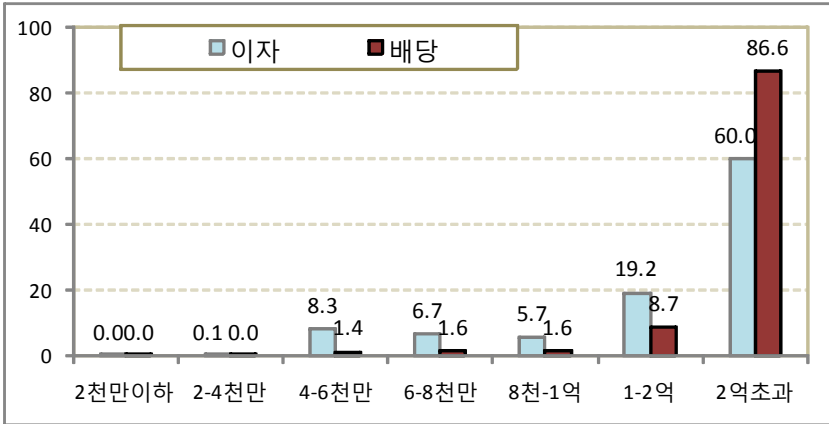
국민계정에서 개인자산 총액은 2013년 7,585조 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5,906조 원, 노동패널에서는 4,186조 원으로 파악된다. 국민계정 대비 비율은 각각 77.9%, 55.2%이다. 조사자료에서는 금융자산의 파악률이 실물자산(주거용 건물 및 토지,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 농경지 임야 임목 등) 파악률보다 낮다. 부동산자산 총액의 파악률은 두 조사에서 각각 88.1%, 68.2%인 데 반하여, 금융자산의 파악률은 각각 59.0%, 31.3%이다.

조사자료에서 금융자산의 파악률이 더 낮은 이유는 금융자산의 집중도가 부동산자산의 집중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일부 사람들이 매우 편중되게 소유하고 있어서 조사자료에서 상대적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림 1-1]에서는 국세통계에서 포착된 이자와 배당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의 가로축은 종합소득을 가리키고, 세로축은 분포(%)를 가리킨다. 조세 단위가 개인이므로 국세통계에서 단위는 개인이다. 총소득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배당의 86.6%를 가져간다. 총소득 1~2억 원인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8.7%를 가져간다. 총소득 1억 원이면 약 소득 상위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배당의 95.3%를 가져간다.

총소득 2억 원인 사람들이 총 이자의 60%를 가져가고, 1~2억 원인 사람들이 총이자의 19.2%를 가져간다. 따라서 소득 상위 1%의 사람들이

[그림 1-1] 국세통계에서 이자와 배당의 분포(% , 2012년 귀속)



자료: 국세통계.

전체 이자의 79.2%를 가져간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 보유의 결과이므로 금융소득의 분포는 금융자산의 분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

조사자료에서는 총소득이 1억 원이 가구도 매우 적게 포착된다. 개인으로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 1% 소득자들이 가져가는데, 최상위 소득층을 잘 포착할 수 없는 조사자료로 금융소득이나 금융자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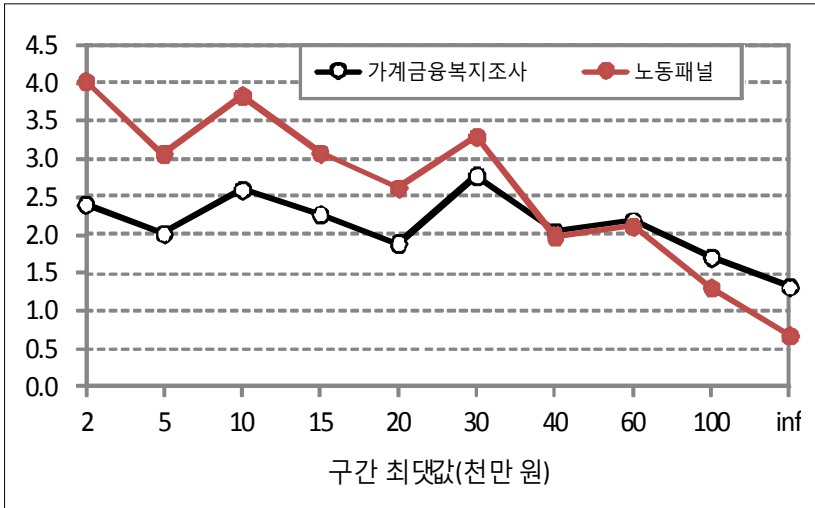
전월세 보증금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나 자기집이든 전월세이든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자산의 소유 집중도는 금융자산의 소유 집중도에 비해 낮다.

부채 총액의 파악률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86.5%, 노동패널에서 63.4%이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파악률이 더 높다. 순자산액은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뺀 것이다. 순자산의 파악률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76.2%, 노동패널에서 53.6%이다.

[그림 1-2]에서는 자산 구간별 가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자산이 적은 가구를 많이 포착하고, 자산이

(그림 1-2) 자산구간별 가구의 분포

(단위: 백 만 가구)



주: 가로축의 숫자는 자산 구간 최댓값(천만 원)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은 1.5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를 의미함.

많은 가구를 적게 포착한다. 예를 들어, 총자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가구수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60만 가구인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384만 가구이다. 총자산이 3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노동패널에서 포착된 가구수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약 1.4~1.7배 정도 많다. 반면, 총자산이 6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노동패널에서 포착된 가구수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적다. 총자산 6~10억 원 구간에 있는 가구수는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30만 가구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71만 가구이다.

<표 1-4>에서는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액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 평균액은 노동패널에서 약 1억 6천만 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억 7,800만 원이다.

두 조사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산이 아주 적은 가구와 자산이 아주 많은 가구에 대한 것이다. 노동패널에서 자산 2천만 원 이하 가구들의 총자산은 394만 원인데 부채는 889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 2천만 원 이하

가구들의 총자산은 660만 원이고 부채는 604만 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준거(準據)가 없어서 어떤 조사가 더 실상에 가까운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구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은 노동패널에서 12억 2,930만 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14억 6,732만 원이다. 순자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가구자산 평균액의 비교(2013년)

(단위: 만 원)

자산 규모	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2천만 원 이하	10억 원 이상	합계	2천만 원 이하	10억 원 이상	합계
총자산	384	122,930	16,080	660	146,732	27,823
금융자산	366	10,413	3,218	546	28,239	7,435
실물자산	18	112,517	12,863	114	118,493	20,388
부채총액	889	25,147	2,970	604	26,096	4,972
순자산	-505	97,783	13,110	56	120,636	22,851

〈표 1-5〉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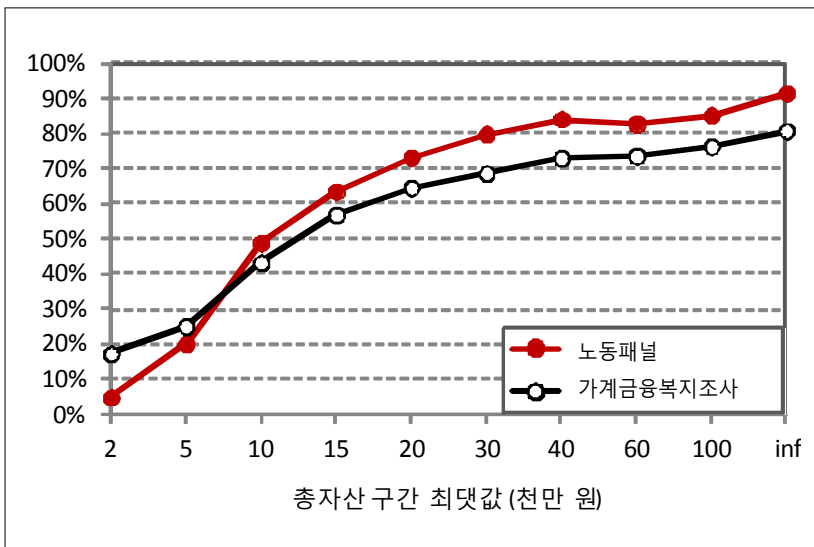
총자산 구간	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2천만 원 이하	0.952	0.048	0.827	0.173
2천만~5천만 원	0.799	0.201	0.749	0.251
5천만~1억 원	0.510	0.490	0.568	0.432
1~1.5억 원	0.366	0.634	0.432	0.568
1.5~2억 원	0.268	0.732	0.355	0.645
2~3억 원	0.203	0.797	0.314	0.686
3~4억 원	0.159	0.841	0.271	0.729
4~6억 원	0.173	0.827	0.264	0.736
6~10억 원	0.148	0.852	0.237	0.763
10억 원 이상	0.085	0.915	0.192	0.808
전 체	0.200	0.800	0.267	0.733

<표 1-5>에서는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자산 구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노동패널에서 20.0%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6.7%이다. 금융자산의 보유는 집중도가 매우 높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까닭이다.

[그림 1-3]에서는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모두 자산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있는 가구의 경우 실물자산의 비중은 43.2%인데 자산이 4억 원이 넘어가면 실물자산의 비중이 73.6%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자산이 증가할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조사자료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상속세 자료에서는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자산이 아주 많은 고자산자들의 자산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3) 총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의 비중



〈표 1-6〉 상속세 자료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금액과 비중(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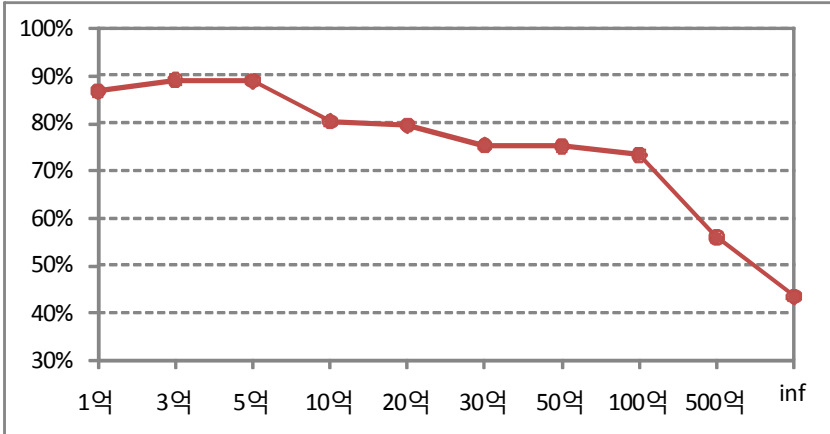
상속자산 규모	금액(백만 원)		비중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전 체	2,345,526	6,171,669	0.275	0.725
1억 원 이하	209	1,375	0.132	0.868
3억 원 이하	4,731	39,127	0.108	0.892
5억 원 이하	9,075	73,740	0.110	0.890
10억 원 이하	133,517	550,745	0.195	0.805
20억 원 이하	456,948	1,790,368	0.203	0.797
30억 원 이하	347,067	1,066,695	0.245	0.755
50억 원 이하	296,821	901,356	0.248	0.752
100억 원 이하	302,401	834,622	0.266	0.734
500억 원 이하	597,111	761,202	0.440	0.560
500억 원 초과	197,646	152,439	0.565	0.435

자료: 국세통계, 6-2-4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금융자산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음.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상속자산을 합한 것임.

〈표 1-6〉에서는 상속세 자료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금액과 비중을 상속자산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금융자산에는 예금과 같은 일반 금융자산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합한 것이다.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상속자산의 가액을 합한 것이다. 상속세 자료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실물자산의 비중이 7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조사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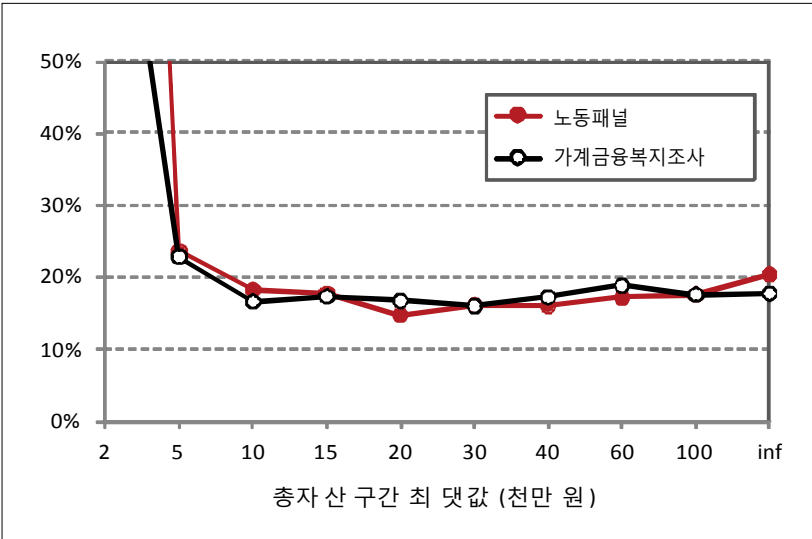
그러나 자산의 규모와 실물자산의 비중과의 관계는 조사자료와 매우 다르다. [그림 1-4]에서는 상속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속자산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자산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할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실물자산의 비중은 10~20억 원 구간에서 80%이지만 500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43.5%까지 하락한다. 최상위 자산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자료에서 파악된 경향이나 추세를 최상위 자산집단에까지 그대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1-4] 상속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통계, 6-2-4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그림 1-5] 부채/총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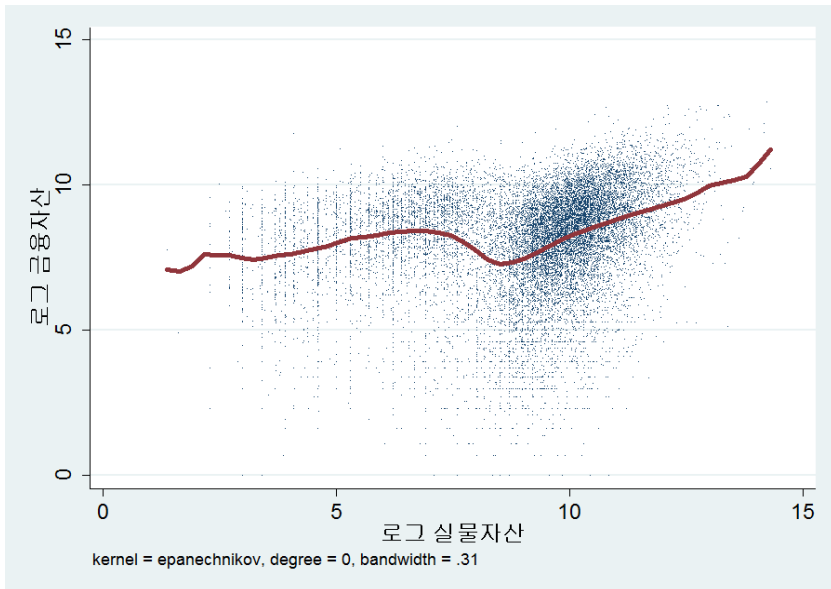


[그림 1-5]에서는 부채/총자산 비율을 자산 구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부채/총자산 비율이 매우 높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91.6%이고, 노동패널에서는 231.3%이다. 자산 2천만 원 이하 가구들이 부채 위험가구라 할 수 있다.

자산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자산이 증가해도 부채/총자산 비율이 17% 수준에서 일정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유한 자산의 17%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두 조사자료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유한 자산에 비추어보면, 자산이 매우 적은 가구를 제외하고는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림 1-6]에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local polynomial smoothing의 방법으로 그린 것이다. 실물자산이 3억 원 정도까지 늘어나도 금융자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실물자산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도 많다. 실물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두 자산의 탄력성은 0.61이다. 실물자산이 1% 증가하면 금융자산은 0.61% 증가한다.

[그림 1-6]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관계(가계금융복지조사)



제3절 맺음말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과 다른 자료의 자산조사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자산을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였다. 금융자산에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이 있고, 실물자산에는 부동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있다. 세분류까지는 두 조사의 차이가 없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부채를 5가지 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한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부채를 3가지 세분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국민계정에서 개인자산 총액은 2013년 7,585조 원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5,906조 원, 노동패널에서는 4,186조 원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계정 대비 비율은 각각 77.9%, 55.2%이다. 노동패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자산이 적은 가구를 많이 포착하고, 자산이 많은 가구를 적게 포착하였다.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자산 구간별로 보여주었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노동패널에서는 20.0%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6.7%이다. 금융자산의 보유는 집중도가 매우 높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이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까닭이다.

제 2 장

노동패널 근로시간 조사

제1절 머리말

근로시간은 노동시장과 근로실태를 이해하는 주요 변수이어서, 근로기준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패널 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노동시장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횡단조사 자료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파악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하고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표본 및 조사 설계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대표적 패널조사로 1998년 1차 조사 당시 한국의 5,000 도시가구(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와 가구를 대표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가구 표집을 위

해 1995년 인구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 제주도와 군부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조사구) 19,025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였다. 가구원 조사는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며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비 및 교육훈련, 근로시간 및 구직활동, 노동이동 등이 조사된다.

한편, 12차년도 조사(2009년)부터는 표본이탈 문제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 대상 표집인 1998년도 추출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415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18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추가 표본의 조사 모집단은 2009년 3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원이며, 모집단 추출 프레임으로는 2005년 인구총조사 표본조사구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2009년도 통합 표본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가장 최근 비교대상 조사인 2015년 조사의 경우, 2010년 인구총조사를 이용하여 1,629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 내 32,000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대상으로 그다음 주에 실시하고, 조사대상 기간 중 공휴일이 연속 3일이면 이전 주에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기본적으로 노동패널의 표본 설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 문항의 경우 매달 조사되나 근로실태 부가조사는 3월과 8월에, 비임금 부가조사는 8월에 실시된다.

전국 가구 및 가구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달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사업체 기준 표집조사이다. 2008년 이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 조사가 실시된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¹⁾의 근로자(상용, 임시·일일, 기타 종사자) 1인 이상 민간부문 전체 사업체를 토대로 한 표본틀을 사용, 약 33,000개의 표본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 근로자는 1~29인의 소규모 사업

1) 사업체노동실태 현황의 원 모집단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전국사업체조사)이다.

〈표 2-1〉 표본 설계 비교

	대표성	표본	조사 기간
노동패널 (2009년도 통합표본)	전국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721가구	3~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 형태 비임금 부가조사)	전국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32,000가구	3월, 8월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 부문 사업체(중사 근로자)	32,879사업체	7~10월 (6월 기준)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2015년 조사 기준.

체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조사하고, 이보다 큰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추출률이 설정된다. 조사 기준은 각 연도 6월 급여계산 기간이며 조사 기간은 7월에서 10월이다. 사업체 기준 표집 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임금근로자로 조사대상이 한정된다.

제3절 노동시간 비교

1. 임금근로자

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먼저, 노동패널 및 비교대상 자료에 나타난 전체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노동패널의 통계치는 각 연도 통합표본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공통적으로 모든 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총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동패널과 비슷한 가구 표본 성격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근로시간은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5년 근

<표 2-2> 임금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조사
		주업 및 부업		주업		
		3월	8월	3월	8월	
2009	46.69	45.63	43.10	45.49	42.89	43.94
2010	46.86	44.97	43.72	44.80	43.51	43.49
2011	46.18	45.18	40.47	45.00	40.25	42.05
2012	45.19	44.63	39.18	44.46	38.97	40.40
2013	44.82	43.49	38.23	43.34	38.02	39.04
2014	44.68	43.57	38.06	43.43	37.88	38.48
2015	43.76	43.57	39.02	43.42	38.84	40.35
전 체	45.18	44.40	40.17	44.24	39.96	40.97

로시간의 경우 그 격차가 0.2시간 정도로 매우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업 근로시간만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근로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8월 부가조사의 경우 3월 조사에 비해 매년 약 3~5시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패널의 경우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을 묻고 있는 데 반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난주 근로시간을 묻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8월 휴가철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근로시간이 평상시보다 다소 짧게 기록될 수 있다.

사업체 표집 조사인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의 경우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주당 근로시간에 비해 약 3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원을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어 노동패널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통계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비교

근로형태별로 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2-3>~<표 2-6>에 정리

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8월 근로시간은 휴가의 영향을 받으므로 3월 근로시간을 비교에 사용하였다. 노동패널에 10차년도부터 포함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같은 비정규직 판별설문을 이용하여 구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정규직의 경우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는 전 기간 동안 최대 1시간 미만으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조사인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평균 3~4시간 정도 주당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의 경우 노동패널에 나타난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도 평균 3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시간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고용형태별(한시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근로)로 분류하여 근로시간을 비교하였다(표 2-5~표 2-7). 한시근로(기간제 및 비기간제 한시)자의 근로시간은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거의 일치하며 근로형태별 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고, 세 조사에서 모두 평균 42시간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단지 최근 2015년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에서만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표 2-3〉 정규직의 근로시간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주업 및 부업	주업	
2009	48.54	48.07	48.00	45.52
2010	48.71	47.86	47.74	45.22
2011	48.15	48.04	47.93	44.34
2012	46.82	47.39	47.30	42.88
2013	46.59	46.03	45.95	41.40
2014	46.52	46.39	46.29	41.33
2015	45.75	46.45	46.36	43.58
전 체	47.06	47.13	47.04	43.37

〈표 2-4〉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주업 및 부업	주업	
2009	42.64	40.76	40.51	38.93
2010	42.99	39.12	38.86	38.19
2011	42.13	39.57	39.26	35.40
2012	42.05	39.10	38.78	32.58
2013	41.13	38.17	37.87	31.27
2014	41.38	37.63	37.38	29.84
2015	40.03	37.45	37.17	30.61
전 체	41.46	38.79	38.51	33.56

〈표 2-5〉 한시근로자의 근로시간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주업 및 부업	주업	
2009	44.17	44.12	43.90	44.24
2010	44.45	42.67	42.42	43.09
2011	43.74	43.41	43.10	42.34
2012	42.78	42.45	42.16	40.50
2013	42.31	41.18	40.92	40.15
2014	41.97	40.84	40.62	40.23
2015	40.62	40.62	40.38	42.16
전 체	42.39	42.16	41.91	41.75

시간제 근로의 경우 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5시간에서 크게는 10시간,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와 비교하면 7~8시간가량 노동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표 2-6).

이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의하는 설문상 차이점에 기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시간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근로)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시간제 근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근로와 마

〈표 2-6〉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주업 및 부업	주업	
2009	30.60	21.96	21.60	28.93
2010	30.57	20.95	20.69	28.51
2011	29.05	19.96	19.57	25.82
2012	28.15	21.33	20.94	21.15
2013	28.04	21.44	21.04	18.99
2014	27.07	20.87	20.53	17.86
2015	27.64	22.07	21.67	19.50
전 체	28.43	21.25	20.88	22.19

〈표 2-7〉 한시근로자의 근로시간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고용실태
		주업 및 부업	주업	
2009	42.39	42.01	41.70	39.60
2010	42.39	41.47	41.21	38.98
2011	41.40	41.66	41.36	35.24
2012	42.00	41.67	41.26	32.72
2013	41.67	41.17	40.84	31.87
2014	41.72	41.05	40.77	29.56
2015	40.21	40.81	40.57	29.82
전 체	41.49	41.41	41.11	33.83

찬가지로, 노동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평균 41.5시간).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최소 2시간, 최근에는 10시간 정도 짧아 큰 차이를 보인다. 사업체조사라는 조사상의 차이 이외에도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제외되어 다른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국가구 및 가구원 대표성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과 거의 일치하여 근로시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업체조사라는 표집 및 조사 차이로 인해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다소 근로시간이 짧게 조사되지만 조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노동패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타 조사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시간제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게 추정되어 있다는 점이 고용형태 분류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고용실태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패널 비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의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만을 비교대상으로 분석한다.

비임금근로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표 2-8), 노동패널 조사에 나타난 비임금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 내외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근로시간은 46시간 정도로 4시간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경우와는 달리 3월, 8월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휴가철에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에서는 사업체에서 평소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을 따로 조사하는데, 이는 50시간 내외로 해당 조사대상 기간 근로시간보다 길고 노동패널의 근

〈표 2-8〉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평소 주당 근로시간
		주업 및 부업		부업		
		3월	8월	3월	8월	
2009	51.95	46.96	47.17	46.68	46.82	50.03
2010	50.68	45.86	46.93	45.59	46.60	49.46
2011	49.97	46.55	45.98	46.29	45.64	49.39
2012	50.06	46.11	44.77	45.86	44.48	48.78
2013	49.27	44.77	44.16	44.52	43.87	48.41
2014	50.01	45.53	44.61	45.25	44.29	-
2015	48.65	45.86	45.40	45.60	45.08	47.96
전 체	49.92	45.95	45.57	45.69	45.25	49.01

로시간과 매우 유사하다.²⁾ 실제 평소 주당 근로시간을 묻는 노동패널과 근로시간 통계치가 비슷한 점은 예상되는 바이지만, 조사대상 기간 근로시간과 체계적으로 3~4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특이하다.

비임금근로 중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의 비교는 <표 2-9>에 정리되어 있다. 노동패널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두에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길다. 비임금근로자 전체 근로시간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조사 해당 기간 주당 근로시간이 평소 주당 근로시간보다 짧게 조사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평소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표 2-10), 앞서 본 패턴과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해당 조사 주당 근로시간보다 길다. 또한, 노동패널의 근로시간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보다 약간 길기는 하지만 평균 1시간 이내로 두 조사 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통계의 비교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패널에

2) 2014년 8월 부가조사에서는 비임금부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다.

〈표 2-9〉 자영업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주 근로시간 (주업 및 부업)			평소 주당 근로시간		
	자영업 총	종업원 유	종업원 무	자영업 총	종업원 유	종업원 무	자영업 총	종업원 유	종업원 무
2009	52.13	55.66	50.32	47.17	52.89	45.16	50.41	54.77	48.88
2010	51.14	55.38	49.13	46.01	51.88	43.85	49.83	53.91	48.37
2011	50.58	53.25	49.26	46.73	52.80	44.49	49.81	53.61	48.46
2012	50.73	53.88	49.40	46.30	51.92	44.17	49.14	53.03	47.73
2013	49.64	52.73	48.32	45.01	50.47	42.98	48.72	52.48	47.39
2014	50.12	53.12	48.90	45.66	51.71	43.39	.	.	.
2015	48.96	52.14	47.54	46.00	51.69	43.68	48.32	52.06	46.84
전체	50.29	53.57	48.80	46.13	51.90	43.97	49.37	53.29	47.95

〈표 2-10〉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당 총근로시간 비교

	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평소 주당 근로시간
		주업 및 부업		부업		
		3월	8월	3월	8월	
2009	51.21	46.08	46.34	45.83	46.03	48.44
2010	48.72	45.15	46.66	44.84	46.35	47.89
2011	47.27	45.70	45.45	45.47	45.11	47.55
2012	46.96	45.17	44.91	44.98	44.67	47.21
2013	47.60	43.58	44.30	43.38	44.06	47.04
2014	49.53	44.88	44.55	44.69	44.31	.
2015	47.14	45.16	45.05	44.95	44.78	46.29
전체	48.25	45.13	45.34	44.90	45.06	47.43

서 조사된 근로시간이 횡단면 가구와 가구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과 거의 일치하여 비임금 근로시간 통계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한 근로시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우

유사하여 노동패널조사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맺음말

본고에서는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근로시간 통계를 대표적인 횡단면조사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과 비교하고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근로시간이 가구의 대표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사업체조사 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의 근로시간이 가구조사인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짧게 조사되었는데, 해당 조사가 사업체 표집조사라는 특성과 인사업당자를 통한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공식적 노동시간만이 파악될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다소 짧게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제 근로의 경우 고용형태의 정의 및 분류상 노동패널의 경우 시간제가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근로시간이 다른 두 횡단면 조사보다 길게 조사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우 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경찰의 경우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노동패널과 유사하나 조사 해당 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이 평소 근로시간보다 체계적으로 3~4시간 짧게 조사된 점이다. 비임금근로자가 사업체의 운영상 월말이나 월초에 비하여 15일이 포함된 주간의 근로시간이 체계적으로 짧거나 평소 근로시간을 과대 보고(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볼 때, 노동패널 통합표본은 전국 가구의 대표성을 가지는 횡단면 조사와 통계치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 조사된 근로시간의 대표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 3 장

지역별 인구구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고령화의 영향³⁾

제1절 서론

인구 고령화는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동공급의 감소, 구매력의 저하, 경제성장의 둔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Bloom, Canning and Fink, 2011). 2006년 OECD 리포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64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8%에서 2050년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1980년에 3.8%였던 것이 2000년에 7.2%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5년에는 13.1%로 이미 고령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미 많은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도 많다. 최재현·윤현위(2012)에 따르면 2010년에 이미 전국 163개 시군구 중에서 80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가 내 인구(노동력)의 고령화가 모든 지역과 산업에 고루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3) 연구조교로서 일한 엄성태, 서지영 학생에게 감사한다.

미한다.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는 지역간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에 다른 영향을 주는데 김우영(2014, 2016)은 고령화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적자본의 성장률도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허문구 외(2013)는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GRDP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Diamond(2013)는 지역간 고령자 비중의 차이는 인적자본의 차이, 더 나아가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차이로 인한 복지의 차이 등을 야기시켜서 지역간 삶의 질의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의 인구구성 측면에서 또는 인구가 동 측면에서 고령화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고령화의 충격이 지역들에게 어떻게 비대칭적(asymmetric)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철희(2012)는 고령화가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인구에 대한 수요, 고령자의 생존확률 등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고령화 정도가 심해지며 고령자에 대한 수요가 줄고 안정성도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지역이라는 요소를 생략하고 있다.

고령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제안·채중훈(2005)은 1987~2002년 동안 전남과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고령화가 실버산업과 관련된 금융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음식·숙박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심재권(2008)은 1989~2006년까지 대전과 충남을 구분하여 고령화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대전은 특화산업이 성장하지만 건설업이 감소하는 반면, 충남은 특화산업이 붕괴되고 있어서 고령화가 도시와 농촌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동수·허문구·이상호(2013)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2010년 인구총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노동생산성 감소 측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구, 부산, 울산 지역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지역 연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치중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지역별·산업별 고령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그 영향이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의 속도는 지역간, 산업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지역 및 산업의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고용조사(RES)와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여 고령인구의 증가가 지역고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간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별 고령자에 대한 수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취약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지역별 인구 및 취업자 고령화

1. 인구 고령화 정도와 그 변화

인구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16개 시도별로 고령자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동패널이 2009년에 1,415가구를 새롭게 표본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의 시점을 2009년부터로 정하였다. 또한, 노동패널의 표본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도 15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고령자 비중을 구하였다.⁴⁾

<표 3-1>은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에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고령자 비중은 12.9%이고, 2015년

4) 또한, 노동패널에서 2009~2015년 동안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령의 최고점을 99세로 한정한다.

에는 15.3%로 약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에서는 동 기간 동안 고령자 비중이 12.8%에서 15.0%로 증가하여 2.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의 각 연도 오른쪽은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을 인구총조사 고령자 비중으로 나눈 것인데 이 비율이 대부분 1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도 제주의 경우에는 노동패널에서 남자가 과소 추정되고 여자가 과대 추정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제주를 대표하기에는 노동패널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표 3-1> 인구(15~99) 중 65세 이상(65~99) 비중

	2009								
	인구총조사			노동패널			노동패널/인구총조사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국	0.129	0.105	0.152	0.128	0.106	0.150	0.99	1.01	0.99
서울	0.104	0.092	0.116	0.106	0.090	0.120	1.02	0.98	1.03
부산	0.127	0.107	0.146	0.123	0.103	0.142	0.97	0.96	0.97
대구	0.117	0.096	0.138	0.115	0.103	0.126	0.98	1.07	0.91
인천	0.101	0.080	0.121	0.100	0.084	0.117	0.99	1.05	0.97
광주	0.106	0.088	0.124	0.110	0.084	0.136	1.04	0.95	1.10
대전	0.101	0.083	0.119	0.100	0.078	0.123	0.99	0.94	1.03
울산	0.081	0.062	0.100	0.089	0.071	0.109	1.10	1.15	1.09
세종	-	-	-	-	-	-	-	-	-
경기	0.103	0.085	0.123	0.104	0.087	0.121	1.01	1.02	0.98
강원	0.177	0.144	0.210	0.157	0.130	0.186	0.89	0.90	0.89
충북	0.161	0.129	0.194	0.166	0.137	0.196	1.03	1.06	1.01
충남	0.181	0.146	0.218	0.181	0.152	0.210	1.00	1.04	0.96
전북	0.191	0.154	0.228	0.181	0.161	0.199	0.95	1.05	0.87
전남	0.236	0.185	0.285	0.226	0.181	0.270	0.96	0.98	0.95
경북	0.191	0.151	0.231	0.194	0.151	0.236	1.02	1.00	1.02
경남	0.146	0.109	0.183	0.147	0.110	0.184	1.01	1.01	1.01
제주	0.153	0.115	0.190	0.153	0.123	0.182	1.00	1.07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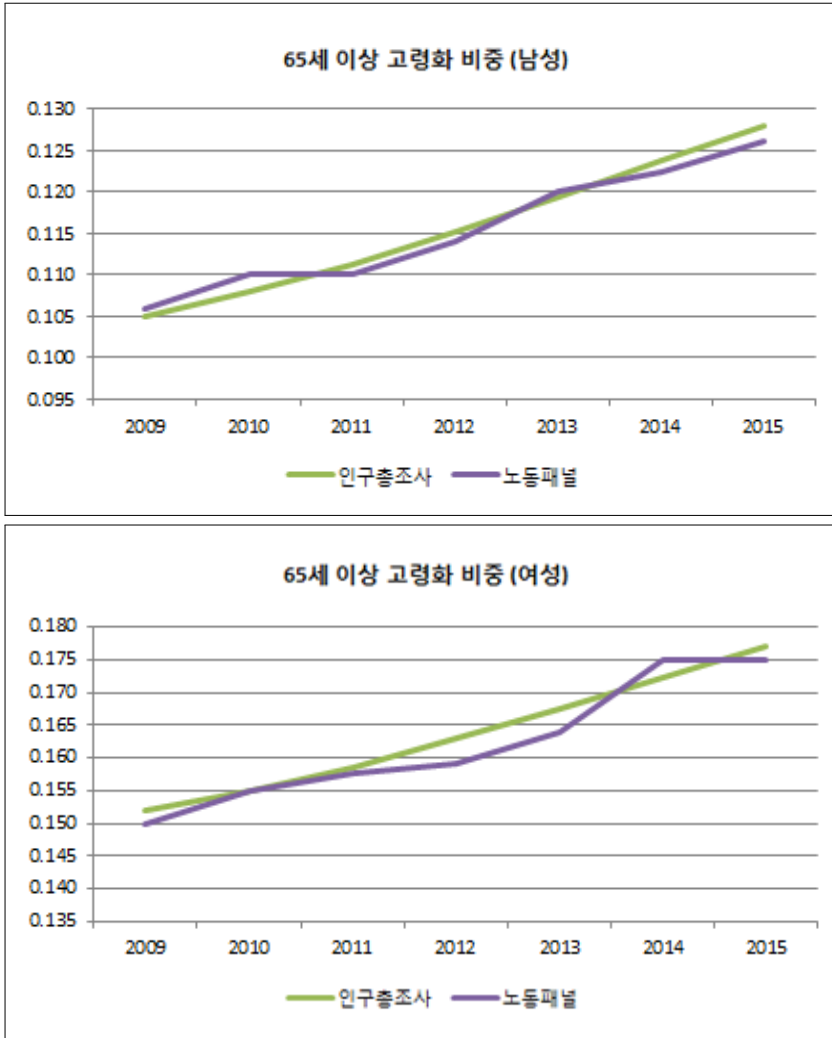
〈표 3-1〉의 계속

	2015								
	인구총조사			노동패널			노동패널/인구총조사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국	0.153	0.128	0.177	0.150	0.126	0.175	0.99	0.98	0.99
서울	0.137	0.124	0.149	0.130	0.119	0.140	0.95	0.96	0.94
부산	0.167	0.146	0.188	0.168	0.142	0.193	1.01	0.98	1.03
대구	0.147	0.124	0.170	0.154	0.126	0.182	1.05	1.01	1.07
인천	0.123	0.103	0.142	0.116	0.092	0.139	0.94	0.90	0.98
광주	0.132	0.113	0.150	0.140	0.130	0.149	1.06	1.15	1.00
대전	0.125	0.107	0.142	0.129	0.109	0.149	1.03	1.02	1.04
울산	0.101	0.085	0.119	0.099	0.078	0.122	0.98	0.92	1.03
세종	0.132	0.106	0.160	0.084	0.000	0.181	0.64	0.00	1.13
경기	0.122	0.103	0.141	0.122	0.103	0.141	1.00	1.00	1.00
강원	0.198	0.162	0.233	0.188	0.153	0.223	0.95	0.94	0.96
충북	0.174	0.142	0.207	0.168	0.136	0.201	0.97	0.96	0.97
충남	0.193	0.156	0.231	0.189	0.149	0.231	0.98	0.95	1.00
전북	0.214	0.174	0.253	0.206	0.158	0.252	0.96	0.90	1.00
전남	0.254	0.203	0.305	0.265	0.220	0.308	1.04	1.09	1.01
경북	0.211	0.169	0.252	0.217	0.178	0.256	1.03	1.05	1.01
경남	0.165	0.129	0.202	0.161	0.130	0.193	0.98	1.01	0.95
제주	0.170	0.136	0.204	0.166	0.105	0.226	0.98	0.77	1.11

두 자료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2009년에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의 남녀간 차이는 [그림 3-1]에 잘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2010년까지 노동패널이 인구총조사보다 고령자 비중을 과대 추정하고 그 이후에는 약간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격차는 크지 않다. 여성의 경우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령자 비중을 과소 추정하고 있으며, 2012~2013년의 경우 그 격차도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림 3-1]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전국, 2009~2015년)



고령화 수준의 지역별 순위는 <표 3-2>에 제시되었는데 우선 2009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23.6%로 가장 높고, 그다음 전북, 경북,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8.1%, 그다음으로 대전이 10.1%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에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도 3-1]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고령자 비중의 순위도 큰 차이를 보이지

〈표 3-2〉 인구(15~99) 중 65세 이상(65~99) 지역별 순위

순위	인구총조사					
	2009			2015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1	전남 0.236	전남 0.185	전남 0.285	전남 0.254	전남 0.203	전남 0.305
2	전북 0.191	전북 0.154	경북 0.231	전북 0.214	전북 0.174	전북 0.253
3	경북 0.191	경북 0.151	전북 0.228	경북 0.211	경북 0.169	경북 0.252
4	충남 0.181	충남 0.146	충남 0.218	강원 0.198	강원 0.162	강원 0.233
5	강원 0.177	강원 0.144	강원 0.210	충남 0.193	충남 0.156	충남 0.231
6	충북 0.161	충북 0.129	충북 0.194	충북 0.174	부산 0.146	충북 0.207
7	제주 0.153	제주 0.115	제주 0.190	제주 0.170	충북 0.142	제주 0.204
8	경남 0.146	경남 0.109	경남 0.183	부산 0.167	제주 0.136	경남 0.202
9	부산 0.127	부산 0.107	부산 0.146	경남 0.165	경남 0.129	부산 0.188
10	대구 0.117	대구 0.096	대구 0.138	대구 0.147	서울 0.124	대구 0.170
11	광주 0.106	서울 0.092	광주 0.124	서울 0.137	대구 0.124	세종 0.160
12	서울 0.104	광주 0.088	경기 0.123	광주 0.132	광주 0.113	광주 0.150
13	경기 0.103	경기 0.085	인천 0.121	세종 0.132	대전 0.107	서울 0.149
14	인천 0.101	대전 0.083	대전 0.119	대전 0.125	세종 0.106	인천 0.142
15	대전 0.101	인천 0.080	서울 0.116	인천 0.123	인천 0.103	대전 0.142
16	울산 0.081	울산 0.062	울산 0.100	경기 0.122	경기 0.103	경기 0.141
17				울산 0.101	울산 0.085	울산 0.119
	전국 0.129	전국 0.105	전국 0.152	전국 0.153	전국 0.128	전국 0.177
노동패널						
1	전남 0.226	전남 0.181	전남 0.270	전남 0.265	전남 0.220	전남 0.308
2	경북 0.194	전북 0.161	경북 0.236	경북 0.217	경북 0.178	경북 0.256
3	충남 0.181	충남 0.152	충남 0.210	전북 0.206	전북 0.158	전북 0.252
4	전북 0.181	경북 0.151	전북 0.199	충남 0.189	강원 0.153	충남 0.231
5	충북 0.166	충북 0.137	충북 0.196	강원 0.188	충남 0.149	제주 0.226
6	강원 0.157	강원 0.130	강원 0.186	부산 0.168	부산 0.142	강원 0.223
7	제주 0.153	제주 0.123	경남 0.184	충북 0.168	충북 0.136	충북 0.201
8	경남 0.147	경남 0.110	제주 0.182	제주 0.166	광주 0.130	부산 0.193
9	부산 0.123	부산 0.103	부산 0.142	경남 0.161	경남 0.130	경남 0.193
10	대구 0.115	대구 0.103	광주 0.136	대구 0.154	대구 0.126	대구 0.182
11	광주 0.110	서울 0.090	대구 0.126	광주 0.140	서울 0.119	세종 0.181
12	서울 0.106	경기 0.087	대전 0.123	서울 0.130	대전 0.109	광주 0.149
13	경기 0.104	인천 0.084	경기 0.121	대전 0.129	제주 0.105	대전 0.149
14	인천 0.100	광주 0.084	서울 0.120	경기 0.122	경기 0.103	경기 0.141
15	대전 0.100	대전 0.078	인천 0.117	인천 0.116	인천 0.092	서울 0.140
16	울산 0.089	울산 0.071	울산 0.109	울산 0.099	울산 0.078	인천 0.139
17				세종 0.084	세종 0.000	울산 0.122
	전국 0.128	전국 0.106	전국 0.150	전국 0.150	전국 0.126	전국 0.175

〈표 3-3〉 인구총조사 고령화 지역 순위와 노동패널 고령화 지역 순위의 상관계수

	인구총조사 (2009)	노동패널 (2009)	인구총조사 (2015)	노동패널 (2015)
인구총조사(2009)	1			
노동패널(2009)	0.89(0.00)	1		
인구총조사(2015)	0.90(0.00)	0.81(0.00)	1	
노동패널(2015)	0.85(0.00)	0.66(0.01)	0.80(0.00)	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p값.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의 고령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편향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9년 및 2015년도 노동패널에서도 전남의 고령자 비중이 각각 22.6%,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하의 순위는 인구총조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한 순위와 노동패널을 기준으로 한 순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조사 순위간 Spearman 상관계수를 추정된 결과를 <표 3-3>에 제시하였다.

인구총조사 2009년과 노동패널 2009년의 지역 순위 사이의 상관관계는 0.8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99%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져 0.80을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도의 고령화 순위에서 있어서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지역 순위와 2015년 지역 순위는 인구총조사의 경우 0.90으로 매우 높은 반면, 노동패널의 경우에는 0.6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총조사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역의 고령화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노동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령화 진전이 지역간 다르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를 분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인구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

우리나라 전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은 앞의 표와 [부도 3-1]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지역의 고령자 비중은 그 지역의 출산율, 기대수명, 그리고 그 지역 내외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고령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령화의 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지역의 두 시점 간 고령화 비중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표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탄력성을 계산하기로 한다.

$$E = \frac{\Delta P/P}{\Delta P_t/P_t}, \quad i \text{는 지역, } t \text{는 시간.} \quad (1)$$

위에서 P 는 고령자의 비중이고, ΔP 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고령자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E 는 전국의 고령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i 지역의 고령자 비중은 몇 % 증가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만약 $E > 1$ 이면 전국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빨리 그 지역의 고령화가 진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E < 1$ 이면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비중의 지역별 탄력성은 <표 3-4>에 제시된다.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는 고령자 비중의 탄력성이 모두 1을 넘고, 도는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고령자 비중의 탄력성은 <부표 3-1>과 <부표 3-2>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은 광역시의 고령화 속도가 도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9~2015년 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의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2015년 고령화 비중은 각각 16.7%, 13.7%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다. 도 지역에서의 탄력성이 낮은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자 비중이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패널을 기준으로 구한 탄력성은 인구총조사 결과와 많은 차

〈표 3-4〉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전체)

	인구총조사			노동패널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서울특별시	1.723	1.579	1.690	1.137	1.299	1.239
부산광역시	1.675	1.635	1.699	1.907	1.935	1.997
대구광역시	1.246	1.433	1.365	2.176	1.508	1.860
인천광역시	1.169	1.188	1.188	0.696	0.934	0.823
광주광역시	1.291	1.301	1.313	0.180	2.504	1.454
대전광역시	1.172	1.263	1.233	0.943	1.924	1.512
울산광역시	1.330	1.397	1.387	0.619	0.576	0.584
세종시	-	-2.742	-	-	-	-
경기도	0.965	0.972	0.967	0.803	1.085	0.960
강원도	0.789	0.529	0.639	1.146	0.954	1.040
충청북도	0.439	0.450	0.435	0.385	-0.167	0.066
충청남도	0.181	0.483	0.333	2.479	0.015	1.038
전라북도	0.594	0.705	0.644	2.363	-0.364	0.746
전라남도	0.485	0.380	0.418	1.102	0.797	0.927
경상북도	0.445	0.685	0.563	-0.210	1.383	0.652
경상남도	0.587	0.838	0.713	-0.136	1.084	0.526
제주도	0.770	0.477	0.601	1.780	-0.437	0.468

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북은 탄력성이 과소 추정되며, 강원도, 충남, 전남은 과대 추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중이 낮은 광역시의 고령화 속도가 고령화 비중이 높은 도 지역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전국의 고령화 비중이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전 지역에 고루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3. 고령화의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최재현·윤현위(2012)에 따르면, 2010년에 이미 전국 163개 시군구 중

에서 80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통계를 통하여 고령자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간 고령자 비중의 차이가 확대되는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식 (2)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로서 이 지수가 0에 가까우면 고령자의 지역 분포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지수가 100에 가까우면 고령자의 지역 분포가 매우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즉, 후자의 경우 특정 지역에 고령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D_t = \frac{1}{2} \sum_i \left| \frac{Old}{Old_t} - \frac{Young}{Young_t} \right|, \quad i \text{는 지역, } t \text{는 시간.} \quad (2)$$

위에서 *Old*와 *Young*은 각각 65세 이상 인구나 65세 미만 인구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식 (3)은 격리지수를 나타내는데 이 지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령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I_t = \sum \left(\frac{Old}{Pop} \cdot \frac{Old}{Old_t} \right) - \frac{Old_t}{Pop_t}, \quad i \text{는 지역, } t \text{는 시간.} \quad (3)$$

위에서 *Pop*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나타낸다. 식 (3)에서 첫 번째 항은 고령화 비중의 가중평균이며 두 번째 항은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이다. 만약 특정 지역에 고령자 비중이 집중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격리지수의 값도 증가하게 된다(Berry and Glaeser, 2005).

<표 3-5>는 인구총조사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계산한 상이지수와 격리지수의 값을 보여준다. 먼저 인구총조사를 보면, 상이지수는 2009년 13.9에서 2015년에 11.4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격리지수도 동 기간 동안 11.1에서 7.93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고령화 비중이 낮은 광역시에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지역들의 고령화 비중이 수렴하고 있는 현상과 일관성을 가진다.

〈표 3-5〉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구 총조사	상이지수	13.90	13.40	13.02	12.57	12.18	11.82	11.44
		격리지수	11.07	10.55	9.69	9.09	8.68	8.30	7.93
	노동 패널	상이지수	12.80	13.12	12.71	12.78	12.58	12.07	11.78
		격리지수	9.29	10.13	9.95	10.23	9.76	9.08	9.27
남자	인구 총조사	상이지수	12.52	11.56	11.10	10.63	10.22	9.81	9.41
		격리지수	7.58	7.19	6.65	6.26	5.99	5.71	5.47
	노동 패널	상이지수	11.89	14.48	12.96	11.68	10.87	9.54	9.75
		격리지수	7.45	8.00	7.51	8.08	7.35	5.74	6.55
여자	인구 총조사	상이지수	15.52	15.04	14.59	14.11	13.76	13.44	13.10
		격리지수	14.82	14.22	13.11	12.33	11.80	11.33	10.83
	노동 패널	상이지수	14.46	14.19	13.96	13.74	14.15	14.29	13.68
		격리지수	12.63	12.51	13.38	12.84	12.69	13.09	12.43

주 : 세종시는 제외되었음.

노동패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지수 값이 인구총조사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격리지수의 추세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패널의 상이지수도 인구총조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격리지수는 2009년 9.29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다시 9.27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에 기초한 격리지수를 이용할 경우 고령자의 특정 지역 집중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볼 때도 인구총조사의 결과는 비슷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성의 상이지수와 격리지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고령자의 지역별 격차가 남성보다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패널을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감소 현상이 확연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상이지수와 격리지수가 높은 것은 인구총조사와 다르지 않다.

제3절 지역별 취업자 고령화

1. 고령 취업자 비중과 그 변화

지역별 취업자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5세 이상 취업자 중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사용하였고, 이를 노동패널과 비교하였다.⁵⁾

취업자 중 고령자(50세 이상)의 비중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2009년 31.8%에서 2015년 37.3%로 증가하였고, 노동패널의 경우에는 29.6%에서 3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패널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패널의 성격상 고령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남성과 여성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을 보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2009년 및 2015년 모두 남성의 고령자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2009년에 남성의 고령자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2015년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 노동패널에서 여성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이 다소 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의 우측에 노동패널 비중을 지역별 고용비중으로 나눈 값은 2009년 0.77(강원)에서 1.01(충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1 이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09년에는 노동패널의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5년은 0.91(강원)에서 1.17(대전)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이 1.03으로 노동패널이 다소 과대 추정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2015년

5) 지역별 고용조사는 처음에는 1년 단위로 공표되다가 2011년부터 분기별로 공표되고 2013년부터는 다시 반기별로 공표되고 있다. 노동패널과의 비교를 위해서 노동패널 설문에 응답한 시기 중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4, 2012년 3/4, 2013년 2/2, 2014년 1/2 사용. 2015년 1/2를 각각 사용하였다.

〈표 3-6〉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2009								
	지역고용조사			노동패널			노동패널/지역고용조사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국	0.318	0.320	0.314	0.296	0.302	0.286	0.93	0.94	0.91
서울	0.278	0.297	0.252	0.276	0.297	0.248	0.99	1.00	0.99
부산	0.335	0.355	0.309	0.308	0.338	0.268	0.92	0.95	0.87
대구	0.298	0.319	0.272	0.279	0.272	0.290	0.94	0.86	1.06
인천	0.267	0.274	0.257	0.253	0.268	0.231	0.95	0.98	0.90
광주	0.271	0.280	0.254	0.248	0.248	0.248	0.92	0.88	0.97
대전	0.277	0.291	0.253	0.242	0.267	0.208	0.88	0.92	0.82
울산	0.270	0.272	0.268	0.266	0.285	0.231	0.98	1.05	0.86
경기	0.270	0.279	0.257	0.248	0.259	0.229	0.92	0.93	0.89
강원	0.393	0.391	0.395	0.302	0.324	0.267	0.77	0.83	0.67
충북	0.354	0.352	0.357	0.295	0.292	0.300	0.83	0.83	0.84
충남	0.386	0.365	0.415	0.391	0.364	0.432	1.01	1.00	1.04
전북	0.418	0.405	0.433	0.380	0.377	0.385	0.91	0.93	0.89
전남	0.485	0.440	0.539	0.436	0.431	0.443	0.90	0.98	0.82
경북	0.420	0.396	0.452	0.388	0.361	0.431	0.92	0.91	0.95
경남	0.361	0.339	0.392	0.327	0.319	0.340	0.91	0.94	0.87
제주	0.354	0.335	0.383	0.350	0.337	0.365	0.99	1.01	0.95

	2015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전국	0.373	0.376	0.370	0.384	0.381	0.387	1.03	1.01	1.05
서울	0.341	0.358	0.321	0.343	0.361	0.320	1.01	1.01	1.00
부산	0.405	0.410	0.399	0.412	0.415	0.409	1.02	1.01	1.02
대구	0.378	0.391	0.359	0.403	0.426	0.373	1.07	1.09	1.04
인천	0.350	0.349	0.355	0.378	0.374	0.383	1.08	1.07	1.08
광주	0.337	0.340	0.330	0.322	0.303	0.357	0.96	0.89	1.08
대전	0.341	0.347	0.334	0.398	0.377	0.430	1.17	1.09	1.29
울산	0.351	0.364	0.332	0.388	0.364	0.429	1.10	1.00	1.29
경기	0.325	0.335	0.310	0.346	0.344	0.349	1.06	1.02	1.13
강원	0.458	0.455	0.463	0.416	0.443	0.372	0.91	0.97	0.80
충북	0.413	0.401	0.429	0.390	0.392	0.387	0.94	0.98	0.90
충남	0.398	0.380	0.423	0.439	0.413	0.476	1.10	1.09	1.12
전북	0.459	0.457	0.462	0.483	0.455	0.526	1.05	1.00	1.14
전남	0.510	0.483	0.546	0.489	0.481	0.503	0.96	1.00	0.92
경북	0.470	0.456	0.490	0.439	0.407	0.486	0.94	0.89	0.99
경남	0.396	0.384	0.416	0.411	0.400	0.430	1.04	1.04	1.03
제주	0.411	0.398	0.428	0.384	0.377	0.396	0.93	0.95	0.93

모두 노동패널에서 강원외의 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강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 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부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2009년, 2015년 사이 1~4위까지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남이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경북, 전북, 강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5년 5위는 충남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충북으로 바뀌면서 순위 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노동패널의 경우에는 2009년, 2015년 전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부터는 순위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보다 노동패널에서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의 변화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과 2015년 사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의 순위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전과 같이 두 시점 사이에 순위 상관계수를 구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전의 <표 3-3>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의 지역간 순위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고령 취업자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

우리나라 전 지역의 취업자 역시 고령화되고 있음은 앞의 표와 [부도 3-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취업자 중 고령자의 전국 비중이 1% 증가할 때 각 지역의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7>은 식 (1)에 기초하여 탄력성을 구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의 취업자 중 고령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광역시의 고령자 비중은 1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지역은 대체로 탄력성이 1 미만을 보이는데 경기도만이 예외적으로 2009~2015년 기간 동안 1이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

한편, 노동패널도 지역별 고용조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표 3-4>와 비교하면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고령자 비중의 탄력성을 구한 <표 3-6>에서 지역별 고용조

〈표 3-7〉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전체)

	지역고용조사			노동패널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서울특별시	1.34	1.20	1.30	0.86	0.78	0.82
부산광역시	1.23	1.12	1.19	1.57	0.61	1.15
대구광역시	1.68	1.24	1.54	1.49	1.44	1.51
인천광역시	1.93	1.45	1.79	1.48	1.77	1.67
광주광역시	1.11	1.82	1.40	1.16	0.83	1.02
대전광역시	1.42	1.16	1.33	2.55	1.42	2.17
울산광역시	2.06	1.07	1.71	1.36	1.70	1.55
경기도	0.90	1.58	1.16	1.19	1.48	1.34
강원도	0.92	1.01	0.95	1.32	1.19	1.28
충청북도	1.22	0.53	0.95	1.33	0.77	1.09
충청남도	0.37	-0.13	0.17	0.72	0.05	0.41
전라북도	0.61	0.50	0.56	0.26	1.88	0.91
전라남도	0.53	-0.06	0.30	0.20	0.74	0.41
경상북도	0.69	0.68	0.68	0.65	0.21	0.44
경상남도	0.32	1.00	0.56	0.92	0.82	0.87
제주도	0.66	1.38	0.92	0.46	0.19	0.33

사와 노동패널의 격차가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을 계산할 경우에는 전체 인구를 표본으로 삼는 것보다는 취업자만을 대상 표본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결과, 즉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지역별 고용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고령 취업자의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5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식 (2), 식 (3)을 이용하여 상이지수와 격리지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가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면 상이지수와 격리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

취업자의 지역간 격차는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상이계수는 2009년 12.28에서 2015년 9.43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패널에서도 10.42에서 8.11로 떨어지고 있다. 격리지수 역시 동 기간 동안 11.89과 9.74에서 각각 7.81과 5.12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의 크기에 있어서는 두 조사간 차이가 있지만 하락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는 인구총조사를 이용할 경우와 노동패널을 이용할 경우 격리지수에서 추세의 차이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남성과 여성을 보면, 지역별 고용조사나 노동패널 모두 상이지수와 격리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가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노동패널의 지수가 지역별 고용조사의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 과소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013~2014년에는 노동패널에서 여성의 지수가 지역별 고용조사보다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 자료로부터 얻어진 상이지수와 격리지수 값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8〉 고령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지수 및 격리지수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지역고용조사	상이지수	12.28	11.70	11.81	10.77	10.19	9.59	9.43
		격리지수	11.89	11.06	11.28	9.73	8.51	7.52	7.81
	노동패널	상이지수	10.42	9.80	9.85	9.33	9.70	9.11	8.11
		격리지수	9.74	7.99	7.53	6.92	7.36	6.54	5.12
남성	지역고용조사	상이지수	9.31	8.69	8.98	8.62	8.24	7.69	7.45
		격리지수	6.97	6.23	6.49	6.48	5.82	5.19	5.11
	노동패널	상이지수	8.49	7.81	7.93	7.84	7.86	6.82	7.07
		격리지수	6.49	4.83	4.70	4.69	4.67	3.75	4.15
여성	지역고용조사	상이지수	16.65	15.98	15.85	14.03	13.03	12.30	12.39
		격리지수	22.04	21.06	21.02	16.10	13.74	12.08	12.14
	노동패널	상이지수	14.77	13.41	13.47	12.53	13.26	12.86	10.47
		격리지수	18.62	16.82	15.11	13.25	14.63	14.58	9.26

주: 세종시는 제외되었음.

제4절 산업의 고령화 추이

1. 산업별 고령자 비중

이철희(2012)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중분류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2010년 50세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속광업이며 그다음으로 농업, 가사서비스 등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1년과 2010년 사이 고령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가사서비스이며 그다음으로 가방/신발제조업, 담배, 공공행정 등으로 나타난다.

노동패널을 산업별로 구분할 경우, 또 더 나아가 지역-산업별로 구분할 경우 중분류를 사용할 경우 관측치가 없는 산업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고용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산업대분류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령화 지수(즉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를 계산하고자 한다.

<표 3-9>는 산업대분류별 고령자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2009년 농업, 임업 및 어업(A)이 82%로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이 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패널 역시 농업, 임업 및 어업(A)이 79%로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이 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순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패널에서 전반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노동패널 비중을 지역별 고용조사 비중으로 나눈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율이 1에 근접하지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과 국제 및 외국기관(U)에서는 1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역시 지역별 고용조사나 노동패널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A)이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표 3-9〉 산업별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2009								
	지역고용조사			노동패널			노동/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0.318	0.320	0.314	0.296	0.303	0.286	0.93	0.94	0.91
A(농업)	0.819	0.793	0.846	0.794	0.779	0.811	0.97	0.98	0.96
B(광업)	0.425	0.441	0.187	0.000	0.000	0.000	0.00	0.00	0.00
C(제조)	0.218	0.207	0.246	0.236	0.228	0.254	1.08	1.10	1.03
D(전기외)	0.210	0.216	0.160	0.369	0.360	0.443	1.76	1.67	2.77
E(하수외)	0.307	0.313	0.258	0.204	0.222	0.000	0.66	0.71	0.00
F(건설)	0.311	0.322	0.208	0.342	0.348	0.279	1.10	1.08	1.34
G(도소매)	0.265	0.260	0.271	0.265	0.247	0.289	1.00	0.95	1.07
H(운수)	0.415	0.438	0.161	0.383	0.400	0.155	0.92	0.91	0.96
I(숙박외)	0.330	0.258	0.366	0.322	0.225	0.370	0.97	0.87	1.01
J(출판외)	0.096	0.110	0.059	0.072	0.097	0.013	0.76	0.88	0.21
K(금융외)	0.141	0.139	0.143	0.149	0.156	0.141	1.06	1.12	0.99
L(부동산)	0.488	0.557	0.359	0.529	0.585	0.384	1.08	1.05	1.07
M(전문외)	0.135	0.176	0.046	0.136	0.163	0.066	1.01	0.93	1.43
N(사업외)	0.461	0.468	0.451	0.363	0.335	0.405	0.79	0.72	0.90
O(공공)	0.399	0.383	0.425	0.257	0.251	0.270	0.64	0.66	0.64
P(교육)	0.162	0.277	0.100	0.158	0.289	0.088	0.98	1.04	0.88
Q(보건복지)	0.172	0.229	0.156	0.148	0.233	0.123	0.86	1.02	0.78
R(예술외)	0.200	0.195	0.206	0.256	0.259	0.252	1.28	1.33	1.22
S(개인외)	0.337	0.317	0.359	0.345	0.297	0.412	1.03	0.93	1.15
T(기타)	0.751	0.791	0.750	0.714	-	0.714	0.95	-	0.95
U(국제)	0.490	0.524	0.405	0.698	0.612	1.000	1.42	1.17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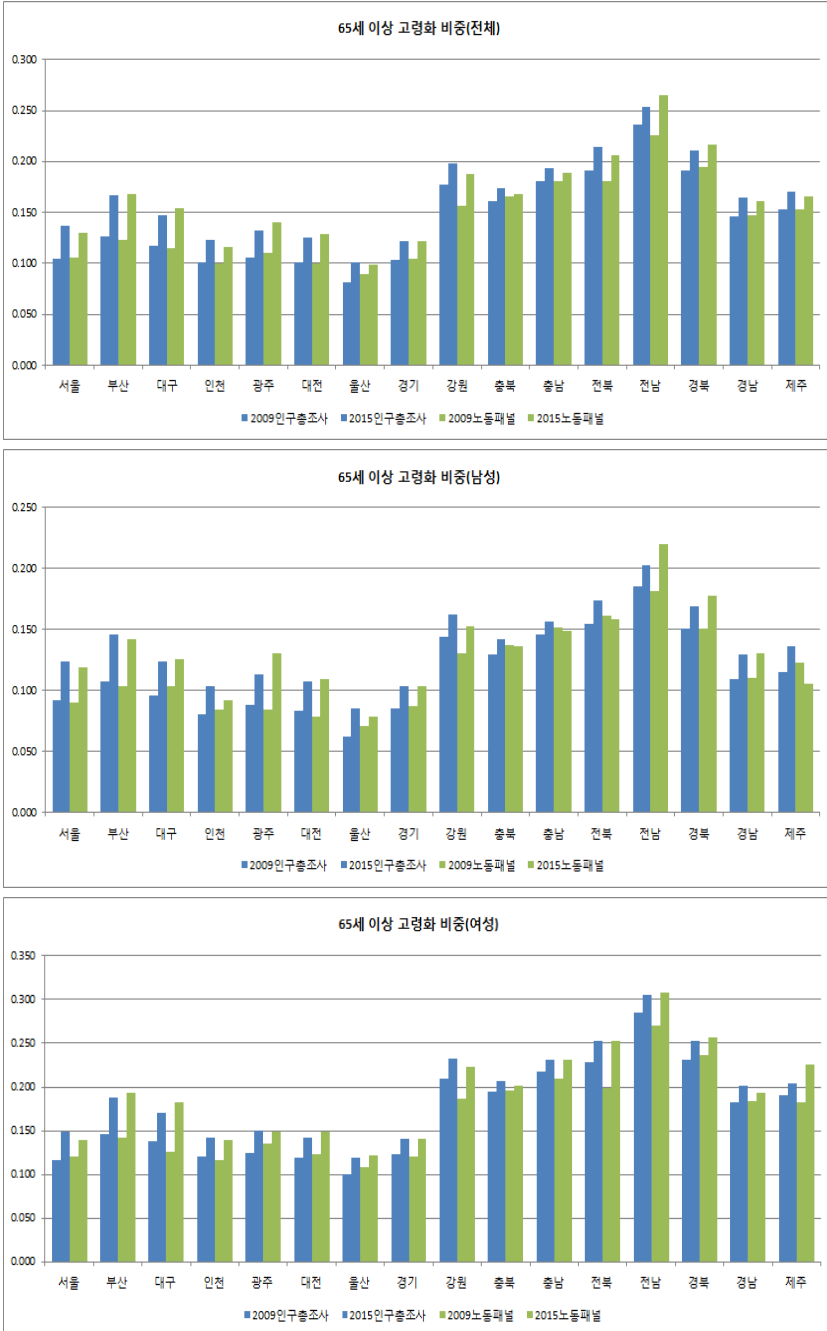
스업(J)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변화폭은 주 자료간 다소 상이한데,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A)의 고령자 비중이 4.4%포인트 증가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의 고령자 비중은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노동패널에서는 전자의 경우 8.1%포인트 증가하고, 후자의 경우 0.6%포인트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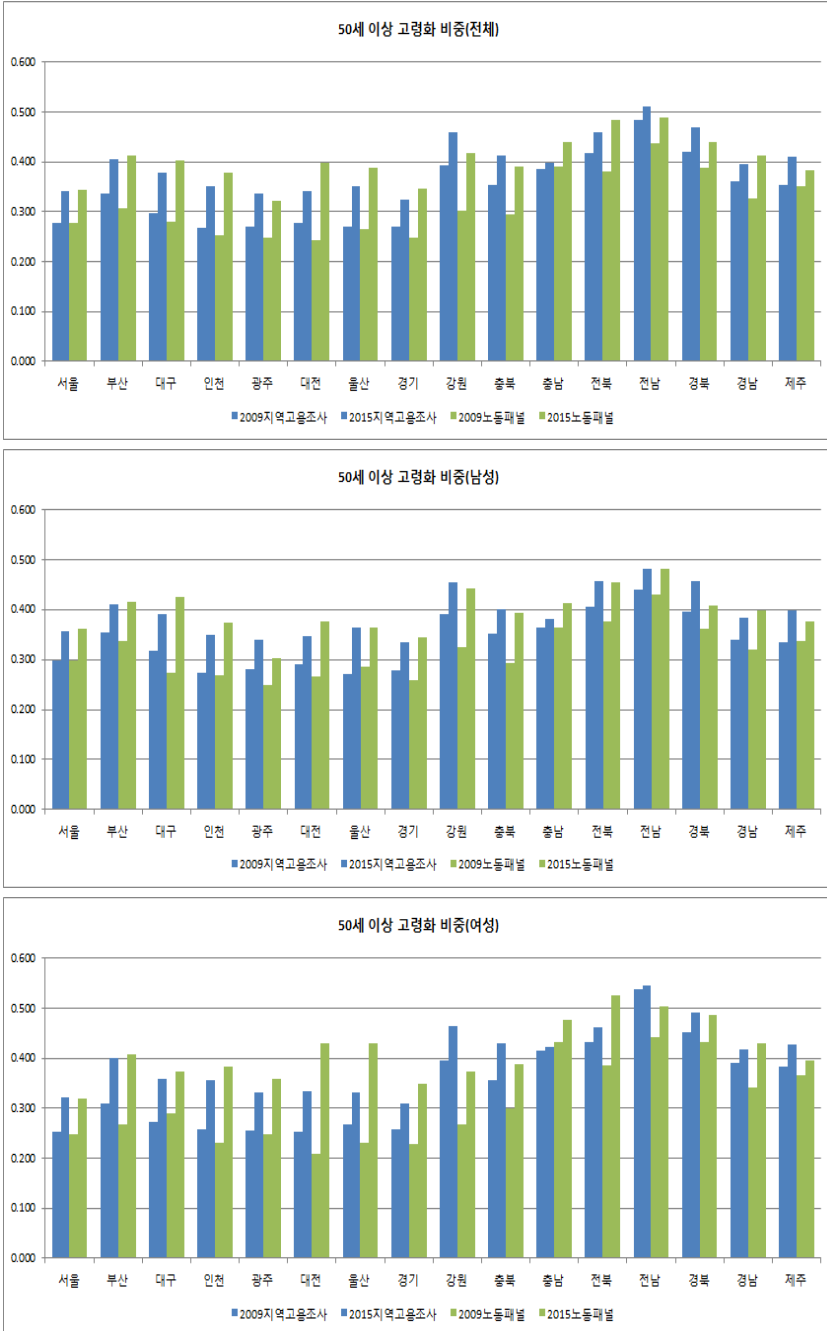
	2015								
	지역고용조사			노동패널			노동/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0.373	0.376	0.370	0.383	0.381	0.387	1.03	1.01	1.05
A(농업)	0.863	0.830	0.908	0.875	0.849	0.910	1.01	1.02	1.00
B(광업)	0.433	0.466	0.242	0.146	0.146	0.000	0.34	0.31	0.00
C(제조)	0.284	0.269	0.319	0.344	0.309	0.427	1.21	1.15	1.34
D(전기외)	0.306	0.336	0.163	0.365	0.330	0.532	1.19	0.98	3.26
E(하수외)	0.416	0.448	0.283	0.619	0.672	0.269	1.49	1.50	0.95
F(건설)	0.442	0.460	0.253	0.425	0.431	0.355	0.96	0.94	1.40
G(도소매)	0.322	0.301	0.345	0.356	0.319	0.401	1.11	1.06	1.16
H(운수)	0.516	0.543	0.255	0.561	0.598	0.244	1.09	1.10	0.96
I(숙박외)	0.398	0.269	0.473	0.452	0.262	0.568	1.14	0.97	1.20
J(출판외)	0.114	0.126	0.080	0.066	0.081	0.027	0.58	0.64	0.34
K(금융외)	0.250	0.263	0.238	0.276	0.267	0.285	1.10	1.01	1.20
L(부동산)	0.526	0.579	0.436	0.617	0.686	0.460	1.17	1.19	1.06
M(전문외)	0.168	0.214	0.076	0.173	0.240	0.063	1.03	1.12	0.82
N(사업외)	0.532	0.509	0.561	0.516	0.514	0.519	0.97	1.01	0.92
O(공공)	0.422	0.423	0.420	0.272	0.277	0.262	0.65	0.65	0.62
P(교육)	0.220	0.320	0.169	0.224	0.315	0.173	1.02	0.98	1.02
Q(보건복지)	0.315	0.373	0.300	0.293	0.317	0.287	0.93	0.85	0.96
R(예술외)	0.249	0.247	0.251	0.171	0.122	0.231	0.69	0.49	0.92
S(개인외)	0.439	0.391	0.480	0.470	0.411	0.546	1.07	1.05	1.14
T(기타)	0.884	0.760	0.888	0.877	-	0.877	0.99	-	0.99
U(국제)	0.523	0.540	0.448	0.386	0.000	1.000	0.74	0.00	2.23

2015년 노동패널과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율은 1을 넘음으로 노동패널의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패널에서의 고령자 비중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는 산업이 있는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 고령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비율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도 3-1] 15~99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부도 3-2] 15세 이상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부표 3-1〉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남자)

	인구총조사			노동패널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서울특별시	1.669	1.422	1.577	1.694	1.573	1.670
부산광역시	1.643	1.539	1.633	1.272	2.470	1.998
대구광역시	1.199	1.379	1.313	0.714	1.469	1.135
인천광역시	1.290	1.279	1.302	1.440	-0.116	0.532
광주광역시	1.338	1.299	1.338	0.226	5.103	2.894
대전광역시	1.216	1.291	1.271	0.518	3.350	2.096
울산광역시	1.528	1.785	1.718	0.611	0.488	0.531
세종시	-	-2.229	-	-	-	-
경기도	0.984	1.026	1.006	0.696	1.229	0.990
강원도	0.762	0.446	0.580	1.563	0.502	0.958
충청북도	0.479	0.490	0.473	-0.755	0.594	-0.015
충청남도	0.230	0.446	0.334	0.607	-0.670	-0.124
전라북도	0.598	0.663	0.621	1.976	-1.517	-0.120
전라남도	0.471	0.412	0.427	0.933	1.328	1.159
경상북도	0.426	0.715	0.568	0.333	1.471	0.953
경상남도	0.649	0.961	0.807	0.987	0.912	0.943
제주도	1.094	0.614	0.829	4.255	-3.522	-0.763

〈부표 3-2〉 고령화의 지역간 비대칭적 영향(여자)

	인구총조사			노동패널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2009~ 2012	2012~ 2015	2009~ 2015
서울특별시	1.735	1.710	1.768	0.850	1.076	0.986
부산광역시	1.693	1.717	1.751	2.878	1.578	2.167
대구광역시	1.283	1.484	1.411	4.127	1.535	2.669
인천광역시	1.055	1.102	1.084	0.149	1.787	1.126
광주광역시	1.250	1.307	1.294	0.188	0.900	0.610
대전광역시	1.130	1.236	1.196	1.495	1.054	1.236
울산광역시	1.182	1.056	1.119	0.784	0.653	0.697
세종시	-	-3.292	-	-	-	-
경기도	0.944	0.918	0.928	1.077	0.977	1.017
강원도	0.824	0.608	0.699	1.026	1.305	1.204
충청북도	0.415	0.427	0.412	1.510	-0.634	0.145
충청남도	0.150	0.525	0.344	0.618	0.548	0.566
전라북도	0.607	0.750	0.676	3.259	0.523	1.577
전라남도	0.519	0.372	0.430	1.497	0.464	0.854
경상북도	0.481	0.671	0.575	-0.681	1.330	0.505
경상남도	0.575	0.752	0.662	-1.016	1.213	0.300
제주도	0.562	0.380	0.454	0.075	2.416	1.469

〈부표 3-3〉 2009~2015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 지역 순위

순위	지역고용조사					
	2009			2015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남성	여성
1	전남 0.485	전남 0.440	전남 0.539	전남 0.510	전남 0.483	전남 0.546
2	경북 0.420	전북 0.405	경북 0.452	경북 0.470	전북 0.457	경북 0.490
3	전북 0.418	경북 0.396	전북 0.433	전북 0.459	경북 0.456	강원 0.463
4	강원 0.393	강원 0.391	충남 0.415	강원 0.458	강원 0.455	전북 0.462
5	충남 0.386	충남 0.365	강원 0.395	충북 0.413	부산 0.410	충북 0.429
6	경남 0.361	부산 0.355	경남 0.392	제주 0.411	충북 0.401	제주 0.428
7	충북 0.354	충북 0.352	제주 0.383	부산 0.405	제주 0.398	충남 0.423
8	제주 0.354	경남 0.339	충북 0.357	충남 0.398	대구 0.391	경남 0.416
9	부산 0.335	제주 0.335	부산 0.309	경남 0.396	경남 0.384	부산 0.399
10	대구 0.298	대구 0.319	대구 0.272	대구 0.378	충남 0.380	대구 0.359
11	서울 0.278	서울 0.297	울산 0.268	울산 0.351	울산 0.364	인천 0.355
12	대전 0.277	대전 0.291	인천 0.257	인천 0.350	서울 0.358	대전 0.334
13	광주 0.271	광주 0.280	경기 0.257	서울 0.341	인천 0.349	울산 0.332
14	울산 0.270	경기 0.279	광주 0.254	대전 0.341	대전 0.347	광주 0.330
15	경기 0.270	인천 0.274	대전 0.253	광주 0.337	광주 0.340	서울 0.321
16	인천 0.267	울산 0.272	서울 0.252	경기 0.325	경기 0.335	경기 0.310
-	전국 0.318	전국 0.320	전국 0.314	전국 0.373	전국 0.376	전국 0.370
순위	노동패널					
	전남 0.436	전남 0.431	전남 0.443	전남 0.489	전남 0.481	전북 0.526
	충남 0.391	전북 0.377	충남 0.432	전북 0.483	전북 0.455	전남 0.503
3	경북 0.388	충남 0.364	경북 0.431	충남 0.439	강원 0.443	경북 0.486
4	전북 0.380	경북 0.361	전북 0.385	경북 0.439	대구 0.426	충남 0.476
5	제주 0.350	부산 0.338	제주 0.365	강원 0.416	부산 0.415	대전 0.430
6	경남 0.327	제주 0.337	경남 0.340	부산 0.412	충남 0.413	경남 0.430
7	부산 0.308	강원 0.324	충북 0.300	경남 0.411	경북 0.407	울산 0.429
8	강원 0.302	경남 0.319	대구 0.290	대구 0.403	경남 0.400	부산 0.409
9	충북 0.295	서울 0.297	부산 0.268	대전 0.398	충북 0.392	제주 0.396
10	대구 0.279	충북 0.292	강원 0.267	충북 0.390	대전 0.377	충북 0.387
11	서울 0.276	울산 0.285	서울 0.248	울산 0.388	제주 0.377	인천 0.383
12	울산 0.266	대구 0.272	광주 0.248	제주 0.384	인천 0.374	대구 0.373
13	인천 0.253	인천 0.268	인천 0.231	인천 0.378	울산 0.364	강원 0.372
14	광주 0.248	대전 0.267	울산 0.231	경기 0.346	서울 0.361	광주 0.357
15	경기 0.248	경기 0.259	경기 0.229	서울 0.343	경기 0.344	경기 0.349
16	대전 0.242	광주 0.248	대전 0.208	광주 0.322	광주 0.303	서울 0.320
-	전국 0.296	전국 0.302	전국 0.286	전국 0.384	전국 0.381	전국 0.387

〈부표 3-4〉 산업별 고령자 비중 순위(2009~2015)

순위	지역고용조사					
	2009			2015		
	전 체	남자	여성	전 체	남자	여성
1	A 0.819	A 0.793	A 0.846	A 0.884	A 0.83	A 0.908
2	T 0.751	T 0.791	T 0.750	T 0.863	T 0.76	T 0.888
3	U 0.490	L 0.557	N 0.451	N 0.532	L 0.579	N 0.561
4	L 0.488	U 0.524	O 0.425	L 0.526	H 0.543	S 0.480
5	N 0.461	N 0.468	U 0.405	U 0.523	U 0.54	I 0.473
6	B 0.425	B 0.441	I 0.366	H 0.516	N 0.509	U 0.448
7	H 0.415	H 0.438	L 0.359	F 0.442	B 0.466	L 0.436
8	O 0.399	O 0.383	S 0.359	S 0.439	F 0.46	O 0.420
9	S 0.337	F 0.322	G 0.271	B 0.433	E 0.448	G 0.345
10	I 0.330	S 0.317	E 0.258	O 0.422	O 0.423	C 0.319
11	F 0.311	E 0.313	C 0.246	E 0.416	S 0.391	Q 0.300
12	E 0.307	P 0.277	F 0.208	I 0.398	Q 0.373	E 0.283
13	G 0.265	G 0.260	R 0.206	G 0.322	D 0.336	H 0.255
14	C 0.218	I 0.258	B 0.187	Q 0.315	P 0.32	F 0.253
15	D 0.210	Q 0.229	H 0.161	D 0.306	G 0.301	R 0.251
16	R 0.200	D 0.216	D 0.160	C 0.284	C 0.269	B 0.242
17	Q 0.172	C 0.207	Q 0.156	K 0.25	I 0.269	K 0.238
18	P 0.162	R 0.195	K 0.143	R 0.249	K 0.263	P 0.169
19	K 0.141	M 0.176	P 0.100	P 0.220	R 0.247	D 0.163
20	M 0.135	K 0.139	J 0.059	M 0.168	M 0.214	J 0.080
21	J 0.096	J 0.110	M 0.046	J 0.114	J 0.126	M 0.076
전체	0.318	0.320	0.314	0.373	0.376	0.370

〈부표 3-4〉의 계속

순위	노동패널					
	2009			2015		
	전 체	남자	여성	전 체	남자	여성
1	A 0.794	A 0.779	U 1.000	T 0.877	A 0.849	U 1.000
2	T 0.714	U 0.612	A 0.811	A 0.875	L 0.686	A 0.910
3	U 0.698	L 0.585	T 0.714	E 0.619	E 0.672	T 0.877
4	L 0.529	H 0.400	D 0.443	L 0.617	H 0.598	I 0.568
5	H 0.383	D 0.360	S 0.412	H 0.561	N 0.514	S 0.546
6	D 0.369	F 0.348	N 0.405	N 0.516	F 0.431	D 0.532
7	N 0.363	N 0.335	L 0.384	S 0.470	S 0.411	N 0.519
8	S 0.345	S 0.297	I 0.370	I 0.452	D 0.330	L 0.460
9	F 0.342	P 0.289	G 0.289	F 0.425	G 0.319	C 0.427
10	I 0.322	R 0.259	F 0.279	U 0.386	Q 0.317	G 0.401
11	G 0.265	O 0.251	O 0.270	D 0.365	P 0.315	F 0.355
12	O 0.257	G 0.247	C 0.254	G 0.356	C 0.309	Q 0.287
13	R 0.256	Q 0.233	R 0.252	C 0.344	O 0.277	K 0.285
14	C 0.236	C 0.228	H 0.155	Q 0.293	K 0.267	E 0.269
15	E 0.204	I 0.225	K 0.141	K 0.276	I 0.262	O 0.262
16	P 0.158	E 0.222	Q 0.123	O 0.272	M 0.24	H 0.244
17	K 0.149	M 0.163	P 0.088	P 0.224	B 0.146	R 0.231
18	Q 0.148	K 0.156	M 0.066	M 0.173	R 0.122	P 0.173
19	M 0.136	J 0.097	J 0.013	R 0.171	J 0.081	M 0.063
20	J 0.072	B 0.000	B 0.000	B 0.146	U 0.000	J 0.027
21	B 0.000	T -	E 0.000	J 0.066	T -	B 0.000
전 체	0.296	0.303	0.286	0.383	0.381	0.387

A-농업, 임업 및 어업/B-광업/C-제조업/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F-건설업/G-도매 및 소매업/H-운수업/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K-금융 및 보험업/L-부동산업 및 임대업/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교육 서비스업/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U-국제 및 외국기관

제 4 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에 대한 검토

제1절 서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는 아래와 같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비를 월 평균으로 환산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하의 분석은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 구성항목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계부 기장 방식을 통해 가구의 소비지출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연혁이 오래된 자료가 바로 가계동향조사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UN이 작성한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COICOP)에 따라 소비항목을 조사 및 편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생활비 항목은 포괄성 면에서 COICOP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월평균 생활비가 가구의 소비지출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현재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해 누락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는 데에 COICOP 체계에 근거해 조사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와의 비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 용돈 같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조사

※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비를 답해 주십시오.

바 1 작년 한 해 동안 _____님 데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H**23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작년 월평균 생활비 _____만원

-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돈입니다.
- ▶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 혼수 장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 기념일, 행사, 가족들과의 외식 등은 외식비에 포함시켜 주시고, 주식을 밖에서 사먹는 경우는 식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월세, 관리비 등과 같은 비용은 주거비에 포함됩니다.
- ▶ 2014년에 가족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숙박당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경비를 월평균 금액(2014년 가족 여행 총 경비÷12개월)으로 계산하여 (9) 교양오락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1인 가구도 동일한 기준으로 여행경비를 교양오락비에 포함)
- ▶ 같이 사는 부모님과 자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부모님과 자녀를 뜻합니다. 비동거 가구원일 경우에는 용돈에 포함시켜 주시고, 분가일 경우에는 제외해 주십시오.

항목	액수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월평균 _____만원
(2) 외식비	월평균 _____만원
(3)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월평균 _____만원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월평균 _____만원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월평균 _____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월평균 _____만원
(7) 정조사비	월평균 _____만원
(8)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월평균 _____만원
(9) 교양오락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월평균 _____만원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월평균 _____만원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월평균 _____만원
(12)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월평균 _____만원
(13) 자녀 용돈	월평균 _____만원
(14) 그 외 가구원의 용돈	월평균 _____만원
(15)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월평균 _____만원
(16) 현금 및 각종 기부금	월평균 _____만원
(17) 국민연금	월평균 _____만원
(18)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월평균 _____만원
(19) 대중교통비	월평균 _____만원
(20) 생활품 구입비	월평균 _____만원
(21) 기타(_____)	월평균 _____만원

되지 않는 항목들이 노동패널의 생활비 항목에는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월평균 생활비 액수를 직접 비교하거나 추세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를 하려면 양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료 이용자 입장에서 왜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액이나 트렌드에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가계동향 조사와의 비교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양 조사에서 공히 포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비항목에 대해 액수 수준과 트렌드를 비교해볼 것이다. 매월 가계부를 쓰고, 이 결과를 취합해 통계를 산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노동패널의 소비 문항은 지난 한 해의 소비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도 꼼꼼이 가계부를 작성해 온 가구가 아니라면 과장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표본에 포함된 가구가 매달 빠짐없이 응답했어야 하는데 실제 조사 현장에서 그렇게 빠짐없이 응답하지 못하는 가구도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가계동향조사도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패널이 기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발생하는 회상 오차(recall error)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패널에서의 개선점을 정리할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비지출 추정을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과 GDP 추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대한 체계적으로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노동패널은 노동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응답 부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략적인 소비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가계가 어렵거나 좋을 때 소비액이 변동하는지, 변동하는 항목이 식료품 같은 필수품인지, 교육인지, 여가인지, 내구재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 노동시장과의 연계 분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적절한 소비항목이 포착되기만 하면 노동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할 때 충분한 분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패널과 비교 가능한 해외 가구패널조사와 비교해 노동패널의 문항 구성이 어떠한지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제2절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 비교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항목 조사 연혁

1차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생활비 단일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1차년도 생활비 설문>

한 달 평균 생활비로 얼마가 됩니까?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이 생활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월 평균 생활비_____만 원

2차년도부터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1차년도만 해도 소비가 아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질문했지만, 2차년도부터는 명시적으로 소비에 대해 질문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소비 항목에 생활비만이 아니라 저축까지 포함되기 시작했다.

<2차년도 소비 설문>

※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비를 답하여 주십시오.

_____님 닥은 지난 한 해 동안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생활비란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이 생활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항목	액수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월평균 _____만 원

(2) 외식비	월평균 _____ 만 원
(3) 공교육비	월평균 _____ 만 원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월평균 _____ 만 원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월평균 _____ 만 원
(6) 주거비(월세,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월평균 _____ 만 원
(7) 경조사비	월평균 _____ 만 원
(8)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월평균 _____ 만 원
(9) 문화비(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월평균 _____ 만 원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월평균 _____ 만 원
(11) 기타 생활용품비	월평균 _____ 만 원

_____님 님 님은 지난 한 해(1998년)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저축(개인 연금, 적금, 보험, 계 등도 포함)을 하셨습니까?

■ 월평균 저축액 _____V02664_____ 만 원

저축까지 소비라는 제목 하에 파악하겠다는 것은 가구가 행하는 지출과 함께 소득-지출=저축을 함께 포착하겠다는 개념적 전환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차년도 생활비 조사 문항은 다시 1차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갔는데, 2차년도에는 명시적으로 생활비에 포함되었던 냉장고 등 내구재 구입비가 생활비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보아 노동패널조사의 생활비 개념은 조사 초창기에 분명한 이상형을 가진 개념이 아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내구재 구입비를 일종의 자산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적어도 3차년도에 근거하면, 소비라는 제목 하에 여전히 생활비와 저축을 묻는 질문이 있는 체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비=생활비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문 작성자들의 개념 속에는 가구의 지출 중 소비지출 개념(비소비지출을 제외한)보다 작은 것으로 생활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3차년도 소비 설문>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비를 답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1999년) 동안 _____님 닥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 ▶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 냉장고나 TV, 가구 등 내구재(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 구입비는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1999년 월평균 생활비 _____만 원

작년 한 해(1999년) 동안 _____님 닥은 한 달 평균 얼마나 저축을 하셨습니까? 저축에는 일반저축, 적금, 보험, 개인연금, 계 등이 포함됩니다.

- 1999년 월평균 _____저축액 V03836 _____만 원

4차년도부터는 다시 2차년도 설문으로 회귀하면서 생활비에 내구재 구입비가 포함된다. 2차년도 설문과 달라진 점은 생활비를 총액으로 얼마나 묻는 다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또한, 세부 항목에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가 새롭게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4차년도 소비 설문>

※ 작년 한 해(2000년) 동안의 소비를 답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2000년) 동안 _____님 닥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2000년 월평균 생활비 _____만 원

-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돈입니다.
- ▶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액수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월평균 _____만 원
(2) 외식비	월평균 _____만 원
(3) 공교육비	월평균 _____만 원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월평균 _____만 원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월평균 _____만 원
(6) 주거비(월세,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월평균 _____만 원
(7) 경조사비	월평균 _____만 원
(8)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월평균 _____만 원
(9) 문화비(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월평균 _____만 원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월평균 _____만 원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월평균 _____만 원
(12) 기타 생활용품비	월평균 _____만 원

저축 문항도 예적금액, 개인연금액, 보장성 보험액, 저축성 보험액, 계 등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세분되었다.

5차년도 설문도 4차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돈” 항목이 세부항목에 추가되었다. 6차년도부터는 소비항목에 저축이 편제된 것이 아니라 소비와 저축항목에 저축이 편제되어 소비와 저축이 개념적으로 분리되었다. 소비 세부항목에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가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다. 7차년도부터는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은 소비라기 보다는 재산의 이전, 미래를 위한 저축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COICOP 체계에서 가구의 비소비지출로 포착되고 있다. 7차년도부터는 소비항목에 소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출까지 확장되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물론, 이때 이전에 이들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당시 설문 개발자들이 명시적으로 이들 항목을 세부

항목으로 나열해 포함하여 관련 지출을 누락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차년도부터는 “기념일, 행사, 가족들과의 외식 등은 외식비에 포함시켜 주시고, 주식을 밖에서 사먹는 경우는 식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가이드가 추가되었다. 9차년도부터는 용돈이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되었으며, “생필품 구입비”가 추가되었다. 11차년도 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었으며, 이후로는 동일한 세부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노동패널조사 초창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4차년도부터는 비교적 혼란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6차년도부터 현재 조사되는 소비 문항 기본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변화는 응답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정도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가계동향조사와 COICOP 설명 및 노동패널과의 비교

UN은 국민계정 산출을 위한 표준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민계정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라 알려진 이 시스템에서 소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별 지출 분류(Classifications of Expenditure According to Purpose)이다. GDP 산출 시 지출은 가계에 의한 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에 의한 지출, 정부지출로 나누어지며, 이 중 가계에 의한 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지출을 합쳐 민간소비라 한다. 목적별 지출 분류는 이에 대응해 가계에 의한 지출을 편제하는 분류, 비영리단체 지출을 편제하는 분류, 정부지출을 편제하는 분류로 구분된다. 가계에 의한 지출을 분류하는 기준은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이하 COICOP)라 불리며,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지출을 편제하는 분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이하 COPNI)라 불린다. 정

부에 의한 지출을 편제하는 분류는 정부기능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라 불린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소비 분류는 가계 지출 분류 기준인 COICOP를 따르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지출 측면에서 GDP 추계 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에도 활용되고 있다. ILO는 물가 산정을 위해 소비자료 수집 시 COICOP 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COICOP를 따라 2008년 말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가 통계청 고시로 제정되었으며, 2010년에 이 기준에 따른 첫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과거 자료도 발표되고 있다. 다만, 아래 <표 4-1>의 소비지출 대분류 항목(01~12)만 COICOP와 동일하며, 이보다 세분된 분류는 COICOP와 연계 가능하게 편제된 COICOP-K 분류에 따른다고 한다. COICOP-K 분류체계 및 가계동향조사에서 실제 어떤 항목들이 조사되는지는 <부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노동패널조사의 세부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노동패널의 (3) 공교육비를 (4) 사교육비와 합쳐서 가계동향조사의 10. 교육항목과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6) 주거비를 04.주거 및 수도광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 보건의료비를 06.보건과 비교할 수 있다. 단, 06.보건 항목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및 수선비가 포함된다. (11) 통신비를 08.통신과 비교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할부구입해 통신요금과 함께 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11) 통신비와 08.통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08.통신은 기본적으로 전화, 팩스 등 통신기기의 구입비가 포함되며, (11) 통신비는 기기 구입비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의 항목은 중요하게 누락하거나 다른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교하기 어렵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동패널의 (1) 식비와 (2) 외식비는 두 항목을 합칠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1.음식, 숙박 중 음식을 합한 값과 비교 가능하다.

노동패널의 (5) 차량유지비와 (18) 대중교통비를 합치면 가계동향조사의 07. 교통 중 자동차, 자전거 등 운송수단 구입비를 제외한 값과 비교 가능하다.⁶⁾

〈표 4-1〉 COICOP 기준에 맞춘 개편 전·후 항목 비교(2008년 기준)

(단위: %)

신 분류		구 분류	
항 목 명	구 성 비	항 목 명	구 성 비
가계지출	100.0	가계지출	100.0
소비지출	77.5	소비지출	83.6
01	식료품· 비주류음료	식료품(외식)	21.3
02	주류· 담배		
03	의류· 신발	의류신발	4.2
04	주거· 수도· 광열	주거	2.8
		광열수도	4.2
0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가사	3.6
06	보건	보건의료	4.4
07	교통	교통통신	14.4
08	통신		
09	오락· 문화	교양오락	3.8
10	교육	교육	10.1
11	음식· 숙박		
12	기타 상품· 서비스	기타 소비지출	14.7
비소비지출	22.5	비소비지출	16.4

주: 개편을 통해 대분류 상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 식료품의 주류, 기타 소비지출의 담배 → 「주류· 담배」로 신설. 식료품의 외식 → 「음식· 숙박」으로 분리. 오락· 문화의 숙박 → 「음식· 숙박」으로 분리. 주거와 광열수도 → 「주거· 수도· 광열」로 통합. 교통· 통신 → 「교통」과 「통신」으로 분리. 교육의 서적 및 문구류 → 「오락· 문화」로 변경. 기타 소비지출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등 → 「비소비지출」로 변경. 기타 소비지출의 귀금속 → 소비지출이 아닌 「기타 지출」로 변경.

자료: 통계청, 2010년 1/4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노동패널의 (7) 경조사비, (16) 현금 및 각종 기부금, (17) 국민연금, (18) 건강보험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니란 점에서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비소비지출⁷⁾에서 이들 항목을 조사한다.

6) 노동패널에서 자동차 구입비는 별도의 설문이 있다.

7) 가계동향조사의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 간 이전 등이 포함된다.

〈표 4-2〉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 분류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비고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0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1. 음식 숙박의 “음식”에 일부 해당	노동패널은 주식을 외식할 경우 식비로 분류
(2) 외식비	11. 음식 숙박의 “음식”에 해당	
(3) 공교육비	10. 교육	통계청 교육은 pre-primary education을 포함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10. 교육	통계청 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이나 학위 없는 각종 교육비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07. 교통	통계청 교통은 차량유지비만이 아니라 차량 구입비도 포함
(6) 주거비(월세,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04. 주거 및 수도광열	
(7) 경조사비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가구간 이진지출로 포착	
(8)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06. 보건	
(9) 교양오락비(TV 시청료,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09. 오락, 문화, 11. 음식 숙박의 “숙박”이 여행일 경우 일부 포함	통계청 오락, 문화는 텔레비전, 오디오 구입 등 관련 내구재 구입이 포함됨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9. 오락, 문화에 분산되어 있음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08. 통신	
(12)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없음	
(13) 자녀 용돈	없음	
(14) 그 외 가구원의 용돈	없음	
(15)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03. 의류 및 신발	
(16) 현금 및 각종 기부금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비영리단체 이진으로 포착	
(17) 국민연금	비소비지출로 포착	
(18) 건강보험료	비소비지출로 포착	
(19) 대중교통비	07. 교통	
(20) 생필품 구입비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다만, 세금 부담액, 고용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이 조사되지 않으므로 노동패널의 상기 네 항목을 합치더라도 가계동향조사의 비소비지출보다는 작은 값이 추정될 것이다.⁸⁾

노동패널의 (9) 교양오락비는 가계동향조사의 09. 오락, 문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노동패널의 (9) 교양오락비에는 여행에 따른 숙박이 포함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숙박이 11.음식, 숙박에 포함되고, 노동패널의 (9) 교양오락비에는 텔레비전 같은 교양 오락과 관련된 전자제품 내구재 구입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계동향조사의 09.오락, 문화에는 이들 내구재 구입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노동패널은 (10) 내구재를 별도로 조사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각 목적별 지출 항목에 내구재 구입 항목이 흩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는 07.교통에, 음향기구나 사진기, 텔레비전 등은 09.오락, 문화에, 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등은 05.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각 지출 항목에 흩어져 있는 내구재 지출을 모두 합치는 것은 가능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이는 COICOP 분류체계가 소비의 성격도 있지만 자산 투자의 성격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구재 지출을 비내구재 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패널은 (12)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3) 자녀용돈, (14)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을 파악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간 이전지출은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포착하지만, 가구내 가구원간 이전지출은 포착하지 않는다.

노동패널은 (15) 피복비에 옷, 신발 등의 구입비를 적도록 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03.의류 및 신발 항목에서 구입비뿐 아니라 수선비, 세탁비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패널은 (20) 생필품 구입비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05.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사사용인 급료 같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가사사용인 급료는 노동패널에서는 누락하지 않았다면 (21) 기타 항목에서 포착되었어야 한다.

8) 노동패널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자녀에게의 이전지출은 별도의 설문으로 포착하고 있다. 부모 및 자녀를 제외한 친인척 등에게 지출하는 이전지출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가계동향조사의 02.주류 및 담배(Alcoholic beverages, tobacco and narcotics),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에 포함되는 돌봄서비스(유아 및 노인 돌봄 등), 이발 등 미용 서비스 이용료, 시계 등 장신구 구입비 등이 노동패널에서는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단, 가계동향조사에서 장신구에는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귀금속은 소비가 아닌 기타 지출⁹⁾로 잡힌다. 노동패널에서도 귀금속은 기타 자산 항목에서 포착된다. 금융 수수료, 부동산 관련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혼례 및 장례를 할 경우 드는 비용도 노동패널은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노동패널의 생활비 세부항목은 가계동향조사의 COICOP 기준과 비교해볼 때 포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노동패널은 소비를 질문할 때 총액으로 월평균 생활비를 묻는 질문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묻는 질문이 구분되어 있다. 면접원 가이드에 따르면 두 질문의 금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세부항목 응답을 먼저 받고 총합을 총액란에 쓰지 못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두 질문은 각각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신 총액 월평균 생활비 \geq 세부항목 생활비의 합이면서, 세부항목 생활비 합이 총액 월평균 생활비보다 80% 미만 적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좀 더 캐묻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액과 세부항목을 별도의 질문으로 만들고 양자의 불일치 원인을 좀 더 캐묻게 만든 것은 노동패널 설문 설계자들이 생활비 세부항목의 포괄성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숙련된 가정주부라면 대략 우리 가정이 월 얼마를 쓴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액 질문을 따로 하고, 대신 회상 오차(recall error)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금액으로 보나 빈도로 보나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나열함으로써 에러 가능성을 줄

9) 가계동향조사에서 기타 지출은 저축 및 적금, 저축성 보험료, 펀드, 유가증권 구입,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보증금 제공, 기타 자산 형태의 변동이라는 항목으로 자산 변동으로 인한 지출을 집계하고 있으며,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부동산 대출 상환,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 이전이라는 항목이 있다. GDP 추계 시에도 귀금속, 예술품, 기타 귀중품 등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기 때문에 소비가 아니라 귀중품 순취득으로 별도 처리한다.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은 노동패널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면서 세부적으로 많은 항목을 나열했을 때 직면할 응답 부담 증대를 회피하고자 한 의도라 할 것이다.

제3절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비액 비교

노동패널조사는 18차(2015년 조사 자료) 조사 자료까지 이용하여 분석한다. 전년도 월평균 생활비를 조사하므로, 노동패널 18차 조사의 생활비는 가계동향조사 2014년 자료에 대응한다.

결과를 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노동패널의 월평균 소비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기부금, 헌금이 노동패널에서는 생활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된다면 노동패널의 생활비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보다 커야 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따로 포착하지 않는 가구 내 용돈 흐름이 노동패널에서는 포착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 용돈은 소비항목 중 어딘가로 들어 갔을 것이어서 총액을 비교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기준 노동패널에서 생활비로 분류하는 비소비지출을 합치면 약 31만 원에 해당되어, 233만 원 - 31만 원 = 202만 원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221만 원보다 약 10%가량 적은 소비지출액이 포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소비항목 분류 비교에서 보았듯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노동패널의 소비항목 구성의 포괄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자동차 구입비, 오토바이나 자전거 구입비, 택배비, 애완동물 관련비, 복권, 주류 및 담배 소비, 커피, 차 같은 음료구입비, 이비용, 가사관련 서비스, 산후조리원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 유지, 인터넷어 비용도 누락 가능성이 있음).

가계동향조사나 노동패널 기존패널은 2008→2009년 소비증가폭이 작고, 2009→2010년, 2010→2011년은 소비증가폭이 크다. 2011→2012년, 2012→2013년은 소비증가폭이 줄어든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

〈표 4-3〉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의 월평균 소비 추이

(단위: 만 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기존패널		2009년 확장패널			
	전체	2인 이상 가구	전체	2인 이상 가구	전체	2인 이상 가구	세부소비항목 합	
전체							2인 이상 가구	
2006	175	195	190	213				
2007	181	202	193	218				
2008	186	211	204	231	195	222	197	225
2009	188	215	206	235	203	232	205	234
2010	200	229	218	251	215	247	217	249
2011	210	239	224	259	223	257	223	258
2012	216	246	228	264	227	261	227	262
2013	217	248	230	269	230	267	230	267
2014	221	255	231	272	233	272	236	274

주: 노동패널의 세부 소비항목의 합이 아닌 월평균 생활비 총액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체와 이후 2011년까지 이어진 경기 회복, 2012년부터의 경기 침체, 2013년 경기 저점을 도달하는 상황을 소비 변동이 양 조사에서 공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09년 확장패널은 아무래도 첫 조사라 2008년 값이 다소 불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해는 기존패널 전체나 확장패널 전체의 평균 차이가 없거나 2~3만 원 수준인데, 유독 2008년만 204만 원 대 195만 원으로 2009년 확장패널이 9만 원가량 낮게 나타난다. 이의 반영으로 2009년 다소 큰 폭으로 소비지출액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때의 증가보다는 2009→2010년의 지출액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장된 첫 해 소비지출액이 불안정한 값을 보였다고 판단한다면 확장패널도 경기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를 보면, 총액이 세분류합보다 큰 가구의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며, 세분류합이 총액보다 큰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총액이

〈표 4-4〉 노동패널의 생활비 총액과 세분류합 크기별 분포와 평균 차이

	가구 분포(%)				평균 차이액(만 원)	
	총액> 세분류합	총액= 세분류합	총액< 세분류합	계	총액> 세분류합	총액< 세분류합
2008	36.6	13.6	49.8	100.0	10	-12
2009	34.8	24.0	41.3	100.0	11	-13
2010	34.6	24.0	41.4	100.0	9	-12
2011	38.5	21.0	40.5	100.0	9	-11
2012	40.6	17.5	41.8	100.0	10	-12
2013	42.2	18.4	39.4	100.0	10	-11
2014	43.7	17.6	38.7	100.0	10	-1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세분류합보다 큰 경우 그 차이는 대략 1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총액보다 세분류합이 큰 경우 그 차이는 대략 12만 원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류합보다 총액이 큰 가구는 아마도 일상적인 지출의 크기보다 세분류가 의미하는 것들이 포괄성이 낮아 가구의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지출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반대의 현상은 일상적인 지출을 회고할 때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세부항목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떠올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쪽 어느 경우든 단순한 측정오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가설이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한 측정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세분류합이 총액보다 큰 경우 세분류합으로 총액을 대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총액>세분류합이라면 세분류의 포괄성을 높여 회상 오차(recall error)를 줄이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혁신패널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따르면, 총액을 면접원이 있는 환경에서 질문하는 것은 실제 지출을 과소 포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반면에 총액을 CAWI 등 혼자 있는 환경에서 적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은행 잔고 확인 등 참

조가 되는 정보의 확인을 통해 과소 보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웹서베이 환경에서 세부항목을 조사한 후 총지출액을 조사하여 교정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다만, 세부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응답의 짐이 매우 커진다. 실제 패널 데이터에서는 간단하게 총지출액만 확인하는 사례도 많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하는 소득과 부 패널이 그런 사례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식비와 음식 숙박관련 지출 항목에 있는 외식비를 합치면 노동패널의 식비와 외식비에 비슷한 개념이 된다. 노동패널에서 식비는 주식비와 부식비라고 되어 있으며, 외식비는 기념일 등의 외식이므로 주류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4년에 가계동향조사의 식비와 외식비를 합치면 50만 8천 원이 되고, 노동패널에서는 51만 1천 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Browning et al.(2003)에 따르면, 식료품과 관련된 비용은 가구의 가장 비중이 큰 지출이고 월별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로 기억을 잘 해낼 수 있는 항목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이 항목만 있어도 가구총지출을 비교적 잘 근사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패널에서도 대체로 이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표 4-5〉 생활비 총액과 세분류합 크기별 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생활비 총액			세부합 총액		
	총액> 세부합	총액= 세부합	총액< 세부합	총액> 세부합	총액= 세부합	총액< 세부합
2008	197	176	197	188	176	209
2009	203	218	195	192	218	209
2010	222	199	219	213	199	231
2011	225	224	220	216	224	230
2012	237	195	229	227	195	240
2013	236	208	235	226	208	246
2014	242	207	242	232	207	25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이외에도 가계동향조사와 노동패널에서 비교적 항목이 유사한 것이 교육비이다. 비교해 보면, 가계동향조사의 교육비보다 노동패널의 교육비가 절대액에서 대략 4~7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1년까지 교육비가 증가하지만 그 이후 감소한다. 노동패널에서는 2009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락 시작 시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11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이하 인구가 감소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교육비 감소 흐름이 두 조사에서 모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비교적 정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주거비, 통신비, 보건 의료비도 비교해 보았다. 주거비는 노동패널이 일관되게 작게 잡히며 최근으로 올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통신비는 두 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보건비는 가계동향조사가 두 배 이상 큰 값을 보였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동통신료와 인터넷 요금 정도로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통신비와 달리 가계동향조사의 주거비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관리비나 월세 외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수리, 쓰레기 비닐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가계동향조사의 보건비는 병의원비나 약제비처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항목 외에도 인삼 등 한방 보약재와

〈표 4-6〉 교육비 비교

(단위: 만 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교육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육 전체
2008	22	13	16	28
2009	23	13	17	30
2010	24	13	16	29
2011	24	13	15	28
2012	23	12	15	27
2013	23	12	14	27
2014	22	12	15	2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4-7〉 주거비, 통신비, 보건의료비 비교

(단위: 만 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주거 및 수도광열	주거비	통신	통신비	보건	보건의료비
2008	20	18	12	11	12	6
2009	20	18	12	11	13	5
2010	22	19	12	12	14	6
2011	23	20	12	13	14	6
2012	24	20	13	13	14	6
2013	25	20	13	13	15	6
2014	25	20	13	13	15	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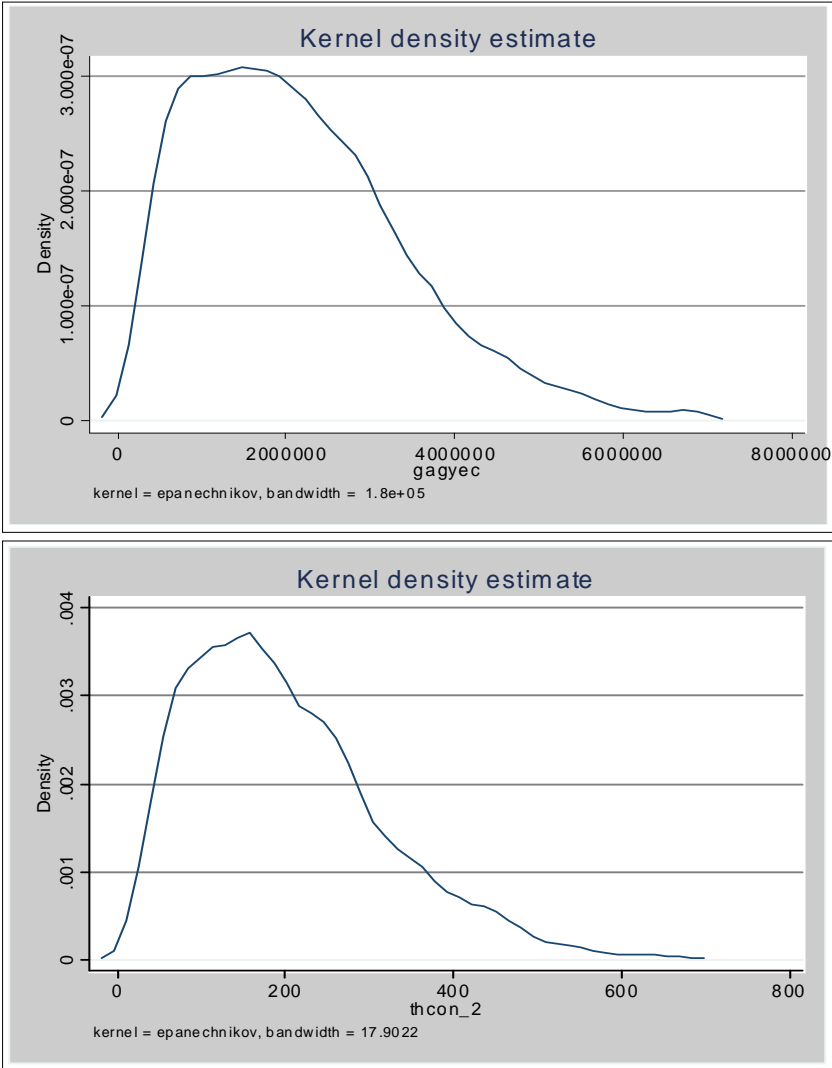
〈표 4-8〉 생활비 수준별 분포 (2014년 기준)

(단위: %)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	
	비중	누적 %	비중	누적 %
50만 원 미만	5.8	5.8	4.4	4.4
50만~100만 원 미만	14.9	20.6	16.9	21.3
100만~150만 원 미만	15.1	35.7	17.4	38.8
150만~200만 원 미만	15.0	50.6	17.7	56.4
200만~250만 원 미만	13.8	64.4	13.8	70.2
250만~300만 원 미만	12.0	76.4	10.9	81.1
300만~350만 원 미만	8.2	84.5	7.0	88.1
350만~400만 원 미만	5.9	90.4	4.6	92.7
400만~450만 원 미만	3.4	93.7	2.9	95.6
450만~500만 원 미만	2.2	95.9	1.7	97.4
500만~550만 원 미만	1.5	97.5	1.0	98.4
550만~600만 원 미만	0.8	98.2	0.5	98.9
600만 원+	1.8	100.0	1.1	100.0
전 체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 소비액 밀도함수(위 : 가계동향조사, 아래 : 노동패널-세부합에서 비소비지출 제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비타민 등 영양보조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간헐적 또는 일회성 지출은 회상 오차(recall error)로 인한 누락 가능성에 취약하기 마련인데, 매달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동향조사

에 비해 지난해 월평균 생활비를 기억해내야 하는 노동패널이 이러한 종류의 누락 가능성에 보다 취약해서 생긴 차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포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패널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생활비가 낮은 쪽에 약간 더 있기는 하지만, <표 4-8>을 계산할 때 노동패널은 비소비지출 항목(경조사비, 국민 및 건강보험료, 기부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액 자체가 가계동향조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제4절 해외 주요 가구패널의 소비지출 질문 구성

소비 파악에 전문화된 조사를 제외하면 가계부 기장 방식 조사는 응답 부담과 조사 주기 관리로 인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 회고적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그럴듯한 대안이 될 수 있다(Browning et al., 2003). 주요 대규모 패널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구소비지출을 조사한다. 여기서는 해외의 대표적 가구패널조사로 할 수 있는 미국의 PSID, 독일 SOEP, 영국 Understanding Society, 호주 HILDA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조사의 소비지출 방식에 대해 비교해볼 것이다.

먼저 PSID를 보면, PSID 지출 관련 조사는 문항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사용된 지출액인지가 약간씩 다르고, 특히 응답자가 불편해 할 경우 얼마간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인지를 응답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Li et al., 2010). 이를테면, 식비는 집에서 식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균 1주(특정 연도의 평균 1주 액수)에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주거비는 보험료나 재산세만 연간으로 질문하며 나머지는 월 지출액을 질문한다. 교통비는 보험료는 연간이고 나머지는 월간이며(지난달), 교육비와 자녀 양육비는 연간(특정 연도가 설정됨)으로 질문한다. 그러나 응답자 편의에 따라 질문과 상관없이 편한 방식으로의 응답도 가능하다. <표 4-9>를 보면 집에서 한 식사비용 응답을 1주 평균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

〈표 4-9〉 PSID의 소비지출 항목과 조사대상 기간 및 응답자 조사대상 기간 응답 비중 분포(1999~2003년 평균치)

지출 카테고리	유효응답을 하는 가족의 비율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실제 응답자 보고 기간					
		조사대상 기간	응답자가 실제로 보고한 비율				
			주간	격주	월간	연간	그 외
음식							
집에서	98.7	일주간	89.4	2.1	7.9	0.5	0.0
집 밖에서	99.1		68.3	2.2	27.7	1.7	.0
배달	99.9		48.0	6.9	41.3	3.7	.0
주택							
저당	99.3	월간	.0	.0	100.0	.0	.0
임대	99.0	월간	.4	.1	99.3	.3	.0
보험	91.7	연간	.0	.0	.0	100.0	.0
재산세	93.9	연간	.0	.0	.0	100.0	.0
전기	96.6	월간	.0	.0	99.2	.7	.1
광열	95.2	월간	.0	.0	91.3	8.0	.8
수도	96.0	월간	.0	.0	86.7	9.8	3.4
기타 유틸리티	99.8	월간	.0	.0	97.2	2.2	.6
교통							
대출	99.1	월간	.0	.0	96.2	.4	3.4
계약금	98.1	연간	.0	.0	.0	100.0	.0
리스료	99.9	월간	.0	.0	98.8	.1	1.1
보험	92.9	연간	.0	.0	22.1	77.9	.0
연료	97.8	월간	.0	.0	100.0	.0	.0
수리	99.0	월간	.0	.0	100.0	.0	.0
기타 차량 비용	99.1	월간	.0	.0	100.0	.0	.0
주차	99.6	월간	.0	.0	100.0	.0	.0
버스 및 기차	99.7	월간	.0	.0	100.0	.0	.0
택시	99.8	월간	.0	.0	100.0	.0	.0
기타 교통비	99.8	월간	.0	.0	100.0	.0	.0
교육	99.2	연간	.0	.0	.0	100.0	.0
육아	99.3	연간	.0	.0	.0	100.0	.0
건강관리							
병원 및 요양	99.6						
의사 방문	99.3						
처방 의약품 재택 의료, 특수시설	99.3						
보험료	88.8						

자료: Li et al.(2010)의 <표 1>을 인용하였음.

지만, 한 달 평균으로 응답한 사람도 약 9% 남짓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 대상이 되는 시기가 특정 연도인 경우도 있고, 지난달인 경우도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PSID에서는 식비는 집, 외식, 배달로 구분해 질문하며, 주거는 모기지 비용, 렌트 비용, 보험료, 재산세, 전기료, 광열비, 수도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질문한다. 교통비는 대부, 리스, 보험, 유류비, 수리비, 기타 장비 부품 비용, 주차비, 대중교통비 등으로 나누어 질문한다. 교육비, 양육비도 조사된다. 보건지출은 병원비, 케어서비스 비용, 의사 왕진비, 처방약 비용, 기타 약 비용, 의료보험료 등이 조사된다. 이들 항목은 2005년 이전에 조사되던 항목인데, 2005년부터는 가구 구입비와 인테리어 관련 소품 비용 질문, 의류 관련 비용, 여행과 휴가비가 추가되었으며, 영화, 스포츠, 예술관람, 독서, 취미 등에 들어간 비용을 recreation & entertainment라는 이름으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 등 휴대폰 월 비용, 위성티비 등 통신비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부표 4-2 참조).

영국의 대규모 가구패널조사인 Understanding Society는 PSID보다 간소한 지출 설문을 가지고 있다. 주거비와 몇 가지 일상지출 비용을 질문하는 정도이다. 주거비 관련해서 모기지 비용이나 렌트비를 질문하는 설문과 난방 및 가스비, 전기료 등을 질문하는 설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지출 관련 내용은 <표 4-10>과 같이 파악된다. 일상지출의 조사대상 시기는 지난 4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과 관련 잡화는 주류는 제외한 식품과 휴지나 일상사무용품(paper products), 청소 관련 용품, 애완동물 식품 등 일상용품 구매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품과 관련 잡화, 외식, 주류 소비에 모두 해당된다. 외식에는 레스토랑이나 식당만이 아니라 학교나 사무실 등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주류는 제외하고 비용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주류 소비는 슈퍼에서 산 것만이 아니라 레스토랑, 펍(Pub) 등에서 소비한 것도 모두 파악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패널조사인 SOEP은 가구지출에 대해 거의 조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음식비나 의복비 같은 항목은 조사되지 않으며, 대출 상환, 친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사서비스 지출(expenditures for household and cleaning help), 육아 지출, 광열, 전기 비용, 모기지 비용, 기타 주거비 정

〈표 4-10〉 영국 Understanding Society의 가구 일상 지출

도입부:	The next questions are about how much your household has spent in the last four weeks on food eaten at home and food bought outside the home. Please include expenditure for all household members even if you are not sure of the exact amounts other people spend.
식품과 관련 잡화	About how much has your household spent in total on food and groceries in the last four weeks from a supermarket or other food shop or market? Please do not include alcohol but do include non-food items such as paper products, home cleaning supplies and pet foods.
외식	And about how much have you and other members of your household {if HHGRID.hhsize greater than 1} spent in total on meals or snacks purchased outside the home in the last four weeks? Please include food bought from takeaways, restaurants, sandwich shops, work or school canteens but do not include alcohol.
주류 소비	About how much have you and other members of your household {if HHGRID.hhsize greater than 1} spent in total on alcohol in the last four weeks? Please include alcohol purchased from a supermarket or off licence and from pubs, restaurants or other venues.

자료: 영국 Understanding Society 8차 설문지.

도가 조사되고 있다. 주거 관련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대해서 사는 사람은 렌트비에 광열, 수도,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따로 조사하여 순수한 임대료만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2016년 설문에는 대략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될지(지난 달 기준)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설문이 포함되었다. 가구 설문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의 「소득-지출=저축」이라는 등식을 이용해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저축할 여력이 얼마인지, 반대로 지출이 소득보다 높다면 결과하는 부족분이 얼마인지, 소득과 지출이 같은지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었다. 소득 파악 설문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대략 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 설문부터 “groceries”에서 하는 지출액이 평소 1주 또는 평소 1개월 기준으로 질문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나 호주 패널조사에서 질문하는 식품 및 일상 잡화 구매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림 4-2] GSOEP의 가구 설문지 지출 질문 구성

70. Overall, were your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s last month

- equal, meaning that you were not able to put away savings but you also didn't have to go into debt or use money out of savings?
- or was your income higher than your expenditures, meaning that you were able to put away savings?
- or were your expenditures higher than your income, meaning that you had to go into debt or use money out of savings?

Income was higher than expenditures, resulting in ability to put away savings..... please state: euros Don't know

Expenditures were higher than income, resulting in a deficit..... please state: euros Don't know

Income and expenditures were equal.....

How did you cover the deficit: by going into debt or by using your savings?

Going into debt.....

Using savings.....

Both.....

Don't know.....

[그림 4-3] GSOEP의 가구설문의 지출 질문 구성(Groceries)

71. How much money do you allow for groceries each week or month to feed yourself and your family in the household?

Please state the average amount either for a normal week or a normal month—whichever is easier for you to answer.

For groceries ... euros **or** in a normal month euros

- in a normal week euros

다만, 2010년에는 좀 더 넓은 소비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일회성으로만 조사가 되었다. <부표 4-3>에 관련 조사항목이 정리되어 있는데, 집에서 먹는 음식비, 외식비(여기에는 음료 모두 포함), 의류, 신발, 화장품, 바디케어제품, 헤어관련 지출, 건강관련(의료, 약 등), 통신(landline, cellular phone, internet), 교육비(직훈 포함), 문화비(영화, 콘서트, 박물관, 전시회 등), 레저 활동, 취미, 스포츠, 동물 등, 휴가, 여행, 생명보험, 사적연금보험, 기타 보험 - 자동차, 집, 기타 재화 관련, 자동차 수리, 교통비, 내구재(가구 등), 기타 지출 등으로 구분되어 상당히 포괄 범위가 넓게 조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가구패널조사인 HILDA의 소비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HILDA는 5차 조사부터 가구 지출에 대해 자기기입식으로 대답할 항목들을 모아놓은 설문 섹션에서 가구 지출을 회고적으로 응답하도록

[그림 4-4] HILDA 가구 설문지의 지출 질문 구성

Household spending

R23. I now have some questions about household spending. How much does this household spend on **all groceries in a **normal week**?**

LIST A on SHOWCARD R23 shows you the type of things to include. Your best guess will do.

- Record whole dollars [1] [pxpgroc]
 Refused [9998]
 Don't know [9999]

R24. And of this amount, about how much of the weekly grocery bill goes on food and drink (but not alcohol)?

LIST B on the showcard shows the type of things to include. Your best guess will do.

INTERVIEWER NOTE: The gap between this and R23 should be mostly cleaning products and toiletries. If the gap is substantial, or the amounts are the same, probe to check accuracy.

- Record whole dollars [1] [pxpfood]
 Refused [9998]
 Don't know [9999]

R25. Approximately, how much would this household usually spend per **week on meals outside the home; that is, restaurants, take-aways, bought lunches and snacks? Do not include anything spent on alcohol.**

WHERE APPLICABLE PROMPT: Include your children's expenditure (e.g., lunch money, etc.)

- Record whole dollars [1] [pxposml]
 Refused [9998]
 Don't know [9999]

하고 있다.

최신 조사인 16차년도 조사자료 설문지를 기반으로 설명하겠다. 각 조사차수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특히 5차 조사와 6차 조사에서 소비문항이 대폭 확충되었다고 한다. HILDA의 소비지출 설문지의 흥미로운 특징은 일부 소비항목을 제외하고는 가구 설문지가 아니라 개인용 자기기입식 설문지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혁신패널 경험에 따르면 면접원이 있는 상태보다 혼자 기입할 때 영수증 등 자료를 더 참고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기입식 설문에서 응답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기입식 설문도 가구의

[그림 4-5] HILDA 자기기입식 설문의 지출 질문 구성

Weekly Expenses (Cross ONE BOX ON EACH line)

		Any expenditure?		HOW MUCH PER WEEK? (on average)		
		NO	YES			
a	Groceries <i>(Include food, cleaning products, pet food and personal care products. Do not include alcohol or tobacco.)</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b	Alcohol <i>(Include alcohol consumed with meals eaten out.)</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c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d	Public transport and taxi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e	Meals eaten out <i>(Include restaurants, take-away food, and bought lunches and snacks. Do not include alcohol.)</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Monthly Expenses

		Any expenditure?		HOW MUCH PER MONTH? (on average)		
		NO	YES			
f	Motor vehicle fuel (petrol, diesel, LPG) and engine o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g	Men's clothing and footwe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h	Women's clothing and footwe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i	Children's clothing and footwea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j	Telephone rent and calls, and internet charges <i>(Include rent and charges on mobile phones)</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Annual Expenses

		Any expenditure?		HOW MUCH IN THE LAST 12 MONTHS?		
		NO	YES			
k	Private health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l	Other insurance (such as home and contents and motor vehicle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m	Fees paid to doctors, dentists, opticians, physiotherapists, chiropractors and any other health practition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n	Medicines, prescriptions and pharmaceuticals <i>(Include alternative medicines.)</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o	Electricity bills, gas bills and other heating fuel (such as firewood and heating o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p	Repairs, renovations and maintenance to your hom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q	Motor vehicle repairs and maintenance <i>(Include regular servicing.)</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r	Education fees paid to schools, universities and other education providers <i>(Include private tuition fees.)</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_____	DO NOT SHOW CENTS

지출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 설문에서는 주거비와 일상 지출을 묻는다. 주거비는 렌트비, 자가 일 경우 오늘의 주택 가격, 모기지 관련 정보, 기타 대출 상환액 등을 질문한다. 가구의 일상 지출은 통상 주에 모든 잡화점(“groceries”: 슈퍼 등)에서 쓴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방식이다. 그다음 그 중에서 음식과 음료(술 제외)로 쓴 비용은 얼마인지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외식비를 묻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PSID에서 집에서 식사와 외식비를 묻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기입식 설문에서는 소비 아이টে에 따라 주당 지출, 월 지출, 연간 지출을 묻는다. 주당 지출을 묻는 항목은 식품, 청소나 설거지, 세탁 등 관련품, 애완동물 음식, 기타 화장품 등(personal care)을 Groceries라는 항목에서 질문하며, 술, 담배, 대중교통비, 외식비도 주당 지출로 묻는다. 월간 지출로는 자동차 연료, 엔진오일, 의류와 신발을 남, 녀, 아동용으로 나누어서, 통신비를 파악한다. 연간 지출로는 사적 건강보험, 기타 보험(자동차, 집 등), 의사 등 건강 관련 서비스 지출, 의약품 및 건강 보조식품 등, 전기가스 광열비, 집 수리와 인테리어 및 유지관리비용, 자동차 수리와 유지비, 교육비(공, 사교육 모두)를 파악하고 있다.

제5절 결론 : 노동패널에 대한 함의

Browning et al.(2003)은 일반 조사에서 소비항목을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총지출 질문을 하되, 비내구재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임을 명확히 해서 질문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와 값비싼 내구재가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응답 대상이 되는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난달 또는 작년의 월평균같이 정확히 써줘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집에서의 음식 소비와 외식비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식비는 소비 중 지출 비중이 매우 큰 항목이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확히 응답할 수 있는 편이라는 점에서, 이

두 항목만 가지고도 총지출을 꽤 잘 임퓨테이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질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였다. 이외에도 광열비와 통신요금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집단에 적절한 소비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면 의료 관련 비용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비와 양육비를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가급적 하위 소비항목을 먼저 묻고 총지출을 나중에 묻는 것도 좋다고 추천하였다. 이외에 추가 질문을 한다면 주거비가 우선 순위라 하였다. 렌트비를 질문한다면 월세에서 수도, 전기료가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였다. 순수한 렌트비를 포착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순위는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큰 내구재 구매이다. 다음으로는 의류나 소규모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전제품, 조리기구 등에 대한 질문이다.

이와 같은 추천은 노동패널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해외 패널과 비교해 보면 노동패널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은 이미 충분히 포괄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괄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 볼 때, 교육비 같은 것은 주요 제도 변화나 인구 변화와 같이 가는 중이며, 구성 항목이 많지 않아 쉽게 응답 가능한 통신비 같은 항목은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간 소비액 변화를 보면, 경기 반응도 가계동향조사와 비슷한 모습인 것으로 추론되어 가계부 기장 방식의 꼼꼼한 조사는 아니지만 소비와 노동공급의 관계 등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꽤 그럴듯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일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소비 중에 비중도 큰 식품, 외식 관련 지출은 2014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거의 같았다. 생활비 전체적인 액수 차이도 노동패널이 다소 포괄성이 떨어지는 소비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분포 차이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항목을 너무 세분하면 응답의 짐이 커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따라서 지나친 세분화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노동패널은 소비자 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소비를 질문해 은퇴-소비 같은 라이프 사

이클 상 변화를 포착하거나, 경기-소비, 실업-소비 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등이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동패널이 노동공급 측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비스 지출이 약하다는 점이 아쉽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연구한다면 가사관리(가사사용인 등)나 양육, 보육, 기타 (고령자)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의 소비 문항 어디에서 이들 문항이 포착되어야 하는지 가이드를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추가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 지출에서 고령자 요양 비용 같은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눈에 띄는 곳에 가이드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의 보건비는 병의원비나 약제비처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항목 외에도 인삼 등 한방 보약제와 비타민 등 영양보조제, 안경 및 콘택트렌즈비를 포함한다. 노동패널도 이런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가이드 추가가 추천된다.

또한, 주류 및 담배나 배달음식, 커피 등 음료 구매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차제에 문항 가이드를 통해 이 부분의 지출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를 포착하는 항목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인테리어 소품 구매 비용(커튼이나 카펫, 가구, 기타 장식품 등), 집수리, 유지관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인테리어 소품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편제되는데, 노동패널은 이에 대응하는 항목이 애매하므로 주거비에 편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은 주거비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점점 차이가 커지고 있고, 본문에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젊은 층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업 시 어떤 항목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내구재, 비내구재, 교육비, 문화비 순의 영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는 지금 항목 구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라 외식이 강화될까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주식이 외식화되는 것은 현재의 외식 정의상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외식의 정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얼마 지출되고 있는지 가구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알 수 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비소비지출 항목인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누락 안 되고 잘 응답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 자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노동패널에서 잘 잡히면 소득재분배 연구에서 노동패널의 활용 범위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표 4-1〉 COICOP-K 분류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 편재 및 가계동향조사 분류 항목 일부 예시

COICOP-K				가계동향조사의 분류 항목 일부 예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식료품	01.1.1	빵 및 곡물	곡물, 곡물가공품(라면, 국수 등),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등
		01.1.2	육류	
		01.1.3	어류 및 수산물	
		01.1.4	우유, 치즈 및 계란	
		01.1.5	식용유지	
		01.1.6	과일	
		01.1.7	채소	
		01.1.8	과자, 병과류 및 당류	
		01.1.9	기타 식료품	
	비주류 음료	01.2.1	커피, 차 및 코코아	
01.2.2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주류 및 담배	주류	02.1.1	증류주	
		02.1.2	와인	
		02.1.3	맥주	
	담배	02.2.0	담배	
마약	02.3.0	마약		
의류 및 신발	의류	03.1.1	섬유	
		03.1.2	의복	
		03.1.3	기타 의류 및 의류 장신구	
		03.1.4	의류 세탁, 수선 및 임차	
	신발	03.2.1	신발	
		03.2.2	신발 수선 및 임차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주택 임차료	04.1.1	임차인이 지불한 실제 임차료	
		04.1.2	기타 임차료	
	의제 주택 임차료	04.2.1	주택 소유주의 의제 임차료	

〈부표 4-1〉의 계속

COICOP-K				가계동향조사의 분류 항목 일부 예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04.3.1	주거시설 유지·수선 재료	관리비 포함
		04.3.2	주거시설 유지 및 수선 서비스	
	수도 및 주거 관련 서비스	04.4.1	수도	
		04.4.2	쓰레기 처리	
		04.4.3	하수 처리	
04.4.4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04.5.1	전기		
	04.5.2	가스		
	04.5.3	액체연료		
	04.5.4	고체연료		
	04.5.5	열에너지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가구, 가사 비품 및 카펫류	05.1.1	가구 및 가사비품	실내 인테리어도 여기 에 포함. 세탁, 각종 가사 사용 인 급료 등도 포함. 에어컨, 정수기, 냉장 고 등도 포함. 전자제품 등 각종 가구 나 가정용품 관련 수 리비도 포함.
		05.1.2	카펫 및 기타 마루덮개	
		05.1.3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류 수리	
	가정용 섬유제품	05.2.0	가정용 섬유제품	
	가정용 기기	05.3.1	주요 가정용 기기(전기제품 여부 관계 없이)	
		05.3.2	가정용 소형 전기기기	
		05.3.3	가정용 기기 수리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05.4.0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정원 용 공구 및 장비	05.5.1	주요 공구 및 장비	
		05.5.2	작은 공구 및 장비	
	일상 생활용 품 및 가사 서비스	05.6.1	비내구성 가정용품	
05.6.2		가구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보건	의료용품 및 장비	06.1.1	의약품	안경, 렌즈도 포함.
		06.1.2	의료용품	
		06.1.3	치료 기기 및 장비	

<부표 4-1>의 계속

COICOP-K			가계동향조사의 분류 항목 일부 예시		
보건	외래환자 서비스	06.2.1	의료 서비스		
		06.2.2	치과 서비스		
06.2.3		준의료 서비스			
병원 서비스	06.3.0	병원 서비스			
교통	운송장비	07.1.1	승용차		자동차 구입비가 포함됨.
		07.1.2	모터사이클		
		07.1.3	자전거		
		07.1.4	동물견인 운송장비		
	개인운송장비 운영	07.2.1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카센터에서 드는 부품비, 수리비도 포함. 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각종 운송요금, 대중교통비 등 포함.	
		07.2.2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07.2.3	개인운송장비 유지·수리		
		07.2.4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운송 서비스	07.3.1	철도 여객운송		
		07.3.2	도로 여객운송		
		07.3.3	항공 여객운송		
		07.3.4	수상 여객운송		
07.3.5		복합 여객운송			
07.3.6		기타 여객운송			
통신	우편 서비스	08.1.0	우편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만이 아니라 전화기, 팩스 구입비도 포함.
	전화 및 팩스 장비	08.2.0	전화 및 팩스 장비		
		08.3.0	전화 및 팩스 서비스		
오락 및 문화	음향, 영상, 사진 및 정보처리 장비	09.1.1	음향·영상 수신, 기록 및 재생 기기	텔레비전, 오디오, 사진기 등 각종 관련 활동과 관련된 기자재, 제품 구입비가 포함됨. 복권, pc방 요금, 각종 문구류 구입, A4용지 구입, 아령이나 실내자전거 구입 같은 운동용품 구입비도 모두 포함.	
		09.1.2	사진·영상 촬영장비 및 광학기기		
		09.1.3	정보처리장비		
		09.1.4	기록매체		
		09.1.5	음향, 영상, 사진 및 정보처리 장비 수리		

〈부표 4-1〉의 계속

COICOP-K			가계동향조사의 분류 항목 일부 예시	
오락 및 문화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09.2.1	야외 오락용 주요 내구재	서적에는 교양도서만이 아니라 참고서, 학습교 재, 중고생 교재 등이 모두 포함.
		09.2.2	악기 및 실내 오락용 주요 내구재	
		09.2.3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유지·수리	
	기타 오락 용품, 조경 용품 및 애완동물	09.3.1	게임, 장난감 및 취미용품	
		09.3.2	스포츠, 캠핑 및 야외 오락장비	
		09.3.3	조경, 식물 및 꽃	
		09.3.4	애완동물 및 관련 제품	
오락 및 문화 서비스	09.3.5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09.4.1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09.4.2	문화 서비스		
신문, 서적 및 문방구	09.4.3	도박성 오락		
	09.5.1	서적		
	09.5.2	신문 및 정기간행물		
	09.5.3	기타 인쇄물		
단체여행	09.5.4	문방구 및 그림용품		
	09.6.0	단체여행		
	교육	유치원 및 초등교육	10.1.0	유치원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10.2.0	중등교육	
중등교육 후 고등교육 전 교육		10.3.0	중등교육 후 고등교육전 교육	
고등교육		10.4.0	고등교육	
기타 교육		10.5.1	학원 및 보습교육	
	10.5.2	기타 교육수준으로 정의될 수 없는 교육		
음식 및 숙박	음식 서비스	11.1.1	음식점, 주점 및 다과점	
		11.1.2	구내식당	
	숙박 서비스	11.2.0	숙박 서비스	

〈부표 4-1〉의 계속

COICOP-K			가계동향조사의 분류 항목 일부 예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12.1.1	이미용 및 미용시설	미장원 비용만이 아니라 각종 치약, 비누, 샴푸, 화장품 등 이미용 제품 구입비도 포함.
		12.1.2	개인용 전기용품	
		12.1.3	기타 개인 미용용품	
	매춘	12.2.0	매춘	목욕 요금도 포함됨.
	기타 개인용품	12.3.1	보석 및 시계	가계동향조사에서 귀금속은 소비가 아니라 기타지출 항목으로 분류
		12.3.2	기타 분류 안된 개인용품	
	사회보장	12.4.0	사회보장	되며, 시계, 장신구, 가방 같은 것만 포함됨.
	보험	12.5.1	생명보험	혼례 및 장제례용품비도 여기에 분류됨. 산후조리원, 보육료 등이 여기에 분류됨.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은 여기에 포함 안됨.
		12.5.2	주거관련 보험	
		12.5.3	건강관련 보험	
12.5.4		운수관련 보험		
12.5.5		기타 보험		
기타 금융 서비스	12.6.1	간접 측정된 금융중개 서비스	은행 이용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그외 기타 수수료, 응시료, 혼례 및 장제례비, 텃(유홍비) 등이 여기에 포함됨.	
	12.6.2	기타 분류 안된 금융 서비스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	12.7.0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		

〈부표 4-2〉 PSID의 소비와 지출(1968~2017)

영역	문항	조사차수
음식		
집에서	F17 & F18 F22: In addition to what you buy with food stamps, do [you and anyone else in your family/you] spend any money on food that you use at home? How much do you spend on that food in an average week?	1968~2017, except '73, '88, '89
배달	F19F23 & F20F24: Do you have any food delivered to the door which isn't included in that? How much do you spend on that food?	1968, 1994~2017
외식	F21F25: About how much do [you and everyone else in your family/you] spend eating out?	1969~2017, except '73, '88, '89
집 수리와 유지		
	F87: How much did you spend altogether in 2008 on home repairs and maintenance, including materials plus any costs for hiring a professional?	2005~2017
가구와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Household furnishings & equipment)		
	F88: How much did you spend altogether in 2008 on household furnishings and equipment, including household textiles, furniture, floor coverings, major appliances, small appliances and miscellaneous housewares?	2005~2017
의류 (Clothing & apparel)		
	F89: How much did you spend altogether in 2008 on clothing and apparel, including footwear, outerwear, and products such as watches or jewelry?	2005~2017
여행, 휴가 (Trips & vacations)		
	F90: How much did you spend altogether in 2008 on trips and vacations, including transportation, accomodations, and recreational expenses on trips?	2005~2017
문화비 (Recreation & entertainment)		
	F91: How much did you spend altogether in 2008 on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including tickets to movies, sporting events, and performing arts and hobbies including exercise, bicycles, trailers, camping, photography, and reading materials?	2005~2017

〈부표 4-2〉의 계속

영역	문항	조사차수
건강관리		
병원, 요양	H64: About how much did you pay out-of-pocket for nursing home and hospital bills in 2007 and 2008 combined?	1999~2017
의사	H70: About how much did you pay out-of-pocket for doctor, outpatient surgery, dental bills in 2007 and 2008 combined?	1999~2017
처방약	H76: About how much did you pay out-of-pocket for prescriptions, in-home medical care, special facilities, and other services in 2007 and 2008 combined?	1999~2017
의료보험	H63: Altogether, how much did [you/your family] pay for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2007 and 2008 combined, for (all of) the health insurance or health care coverage(s) you just mentioned? Please include amounts that you had automatically deducted from your pay, as well as amounts you paid directly.	1999~2017
총 의료비 (자신을 위한)	H82: Could you give me your best estimate of the total cost of all medical care for you in 2007 and 2008 combined? That is, the total of your out-of-pocket costs you gave me, plus the costs covered by Medicare, Medicaid, or other health insurance?	1999~2017
총 의료비 (자신과 가족을 위한)	W39B2: If you added up all medical bills (for all of (your/the) family living there), about how much would they amount to right now?	2011~2017
주거 (Housing)		
저당, 융자 (Mortgage)	A25: How much are your monthly mortgage payments? A30: Do your payments include insurance premiums? A29: Do your payments include property tax?	1968~2017, except '73, '74, '75, '82, '88, '89
렌트	A31: About how much rent do you pay a month? A31b. Is heat included in your monthly rent?	1968~2017, except '88, '89
	A31a. Does (the rent/this amount) include water and sewer?	2011~2017
보험	A22: How much is your total yearly homeowner's insurance premium?	1991~2017

〈부표 4-2〉의 계속

영역	문항	조사차수
재산세	A21: About how much are your total yearly property taxes, including city, county, and school taxes?	1968~2017, except '78, '88, '89
전기(와 수도)	A42 (A48): The next few questions are about amounts paid for utilities, such as electricity and water. How much [do you/does your family] usually pay for electricity per month?	1981~1983, 1999~2017
광열	A41 (A49): How much [do you/does your family] usually pay) for gas or other types of heating fuel per month on average?	1981~1983, 1999~2017
전기와 가스	A42a: How much do you [and your family living there] usually pay for gas and electricity combined? IF COMBINED	2007~2017
수도	A43 (A50): How much [do you/does your family] usually pay) for water and sewer per month?	1981~1983, 1999~2017
기타 유틸리티	A45 (A51): And do you have any other utility expenses? A45a (A52): What were those other utilities expenses? A45b (A53): On average, how much are these other utility expenses per month?	1981~1983, 1999~2017
통신	A44. How much do you usually pay for telephone, including cell phone, cable or satellite TV, Internet service per month?	2005~2017
교통		
대출	F67 (V20): How much are your payments and how often are they made?	1968, 1999~2017
계약금	F64 (V17): How much did you put down in cash?	1999~2017
리스	F71 (V24): How much was your initial outlay for that lease -- including your down payment and any fees? F72(V25):Howmuchareyourpaymentsandhowoftenaretheymade?	1999~2017
보험	F77 (X1): How much do [you/you and your family living there] pay for car insurance [per year/for all your vehicles per year]?	1968, 1999~2017

〈부표 4-2〉의 계속

영역	문항	조사차수
수리, 유지비	F80a (X4a): Altogether in the last month, how much did [you/you and your family living there] pay for each of these transportation related expenses...	1999~2017
연료	F80b (X4b).	1999~2017
주차와 카풀비용	F80c (X4c).	1999~2017
버스와 기차	F81a (X4d).	1999~2017
택시	F81b (X4e).	1999~2017
기타 교통비 (Other transportation)	F81c (X4f).	1999~2017
자동차 관련 기타 지출 (Other vehicle expenditures)	F79 (X3): (Other than the car payments you already told me about,) how much did you pay in car payments?	1999~2017
교육		
Education	F82 (X6): In 2008, did [you/you and your family living there] have any school-related expenses such as: - Purchase or rental of books, supplies, uniforms, or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and software; - Tuition or tutoring not including any amounts for day care or nursery school. I will ask you about those later; - Room and board for a family member who is away at school? -Any other expenses? F83(X7):Howmuchintotalweretheseexpenses?	1999~2017
	F84 (X8): In 2008, were there any other school-related expenses not already covered in the previous question? F85 (X9): What other types of school-related expenses did you have? F86 (X10): Altogether, how much were these other expenses?	1999~2017
	W39B1. If you added up all student loans (for all of (your/the) family living there), about how much would they amount to right now?	2011~2017

〈부표 4-2〉의 계속

영역	문항	조사차수
육아		
Child Care	F6d (F7): How much did [you and your family living there/you] pay for child care in 2008? for which months?	1970, '71, '72, '76, '77, '79, '85, 1988~2017

자료: PSID 홈페이지.

〈부표 4-3〉 독일 가구패널조사의 2010년 소비모듈

	항목	있다/ 없다	2009년 지출(응답기간)			
			per month			per year
1	음식, 식료품점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2	음식/ 집 밖에서 먹는 음료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3	의류/ 신발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4	바디케어/화장품/미용사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5	건강(예: 의약품, 진찰료)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6	통신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7	교육/ 추가교육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8	문화(극장, 영화관, 콘서트, 박물관, 전시회)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9	여가활동, 취미, 스포츠, 마당과 정원, 동물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0	짧은 휴가를 포함한 여행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1	생명보험, 개인적 연금보험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2	기타 보험 정책 (예: 자동차, 법률, 가정용품)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3	자동차 수리 (오토바이 포함)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4	운송수단 (차, 기차, 버스, 기타)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5	앞에 언급되지 않은 가구, 가전제품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16	기타 지출	Yes..... No	<input type="checkbox"/>	⇒		of

다른 지출은 명시해 주세요.

참고문헌

- 김우영(2014), 「인적자본의 지역간 불평등: 고령화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5), pp.747~760.
- 김제안·채중훈(2005), 「고령화사회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8(1), pp.213~230.
- 심재권(2008),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pp.125~146.
- 이정우·이성림(2002),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7(1), pp.1~28.
- 전병유·정준호(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pp.105~134
- 최재현·윤현위(2012),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7(3), pp.359~374.
- 허문구·이상호·최윤기·김동수·박형진(2013),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Berry, C. and E. Glaeser(2005), “The Divergence of Human Capital Levels Across Cit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4(3), pp.407~444.
- Bloom, E. D., D. Canning, and G. Fink(2011),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for Economic Growth,” PGDA Working Paper No.64, Harvard University.
- Browning, Martin, Thomas F. Crossley and Guglielmo Weber(2003), Asking Consumption Questions in General Purpose Surveys,

The Economic Journal 113(491), pp.F540-F567.

Kim, W. Y.(2016), "Can the Difference in Ageing Across Cities Explain the Divergence of Human Capital Across Cities in Korea?" 23(13), pp.958~964.

Li, Geng, Robert F. Schoeni, Sheldon Danziger, and Kerwin Kofi Charles(2010), "New Expenditure Data in the Psid: Comparisons with the ce," *Monthly Labor Review*.

Marcus, Jan, Rainer Siegers, and Markus M. Grabka(2013), "Preparation of Data from the New SOEP Consumption Module Editing, Imputation, and Smoothing," DIW Berlin.

◆ 執筆陣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안태현(서강대 부교수)
- 김우영(공주대 교수)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패널자료 연구(Ⅱ)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 |
|---------|--|
| ▪ 발행연월일 | 2016년 12월 24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방 하 남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록 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 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124-8